

주요국의 서면질의 제도 연구

2022. 12.

정훈·권순오·이희경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권순오 특수전문직 4급

이희경 특수전문직 4급

목 차

I. 서론	1
II. 서면질의 제도 운영 현황	4
1. 서면질의 제도 개관	4
가. 제도 개요	4
나. 관련 법령	13
다. 운영 현황	14
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와의 관련성	15
마. 통계	18
2. 서면질의 제도의 쟁점	20
III. 다른 기관 및 주요국의 운영 사례	22
1. 다른 기관의 운영 사례	22
가. 법제처	22
2. 주요국의 운영 사례	29
가. 미국	29
나. 영국	35
다. 일본	41
라. 호주	50
마. 독일	61
바. 프랑스	64
사. 벨기에	69
3. 주요국의 운영 사례 비교	74

IV. 개선 방안	78
1. 개선 방안	78
가. 서면질의 양식 개선	78
나. 명칭 변경	81
다. 업무담당부서 신설 또는 개편	82
2. 각 방안의 종합 검토 결과	88
V. 결론	90
참고문헌	92

표 목차

〈표 II-1〉 서면질의 제도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서 반려대상	5
〈표 II-2〉 서면질의 담당 분야별 담당 부서	6
〈표 II-3〉 국세청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비교	16
〈표 II-4〉 최근 5년간 연도별 서면질의 현황	18
〈표 II-5〉 서면질의 신청 건수	20
〈표 II-6〉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서면질의 건수	20
〈표 II-7〉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진행상황 통지 건수	20
〈표 III-1〉 집단 결정 신청서 기재 사항	53
〈표 III-2〉 주요국의 질의회신 제도 비교	74
〈표 IV-1〉 서면질의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	80
〈표 IV-2〉 질의사항 평정 양식 및 평정 기준(예시)	86
〈표 IV-3〉 각 개선 방안의 종합 검토 결과 요약	88

그림 목차

[그림 II-1] 서면질의 신청서 서식	7
[그림 II-2] 세법 등 해석 신청서	11
[그림 II-3] 세법해석 제도 처리절차 도식	13
[그림 III-1]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처리 절차	23
[그림 III-2]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서(서면용) 양식	26
[그림 III-3]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서 양식	28
[그림 III-4] 영국 Annex A - Checklist for clearance service 양식	38
[그림 III-5]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	44
[그림 III-6]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1)	45
[그림 III-7]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2)	46
[그림 III-8]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3)	47
[그림 III-9] 사전조회 양식 체크리스트(별지 1-4)	48
[그림 III-10] 복잡한 조언 요청 신청 페이지	59
[그림 III-11] 프랑스 Le rescrit général 양식	67
[그림 IV-1] 통합 접수부서 신설 방안 처리절차 도식	87

I. 서론

- 납세자의 조세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집행하는 법적 해석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음¹⁾
 - 전 세계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납세 지위 및 세액 등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실무로 여겨지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해석은 공적 의견(public ruling)과 사적 의견(private ruling)으로 구분됨
 - 공적 의견과 사적 의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적 의견은 납세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력과 더불어 납세자 개별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점임

- 우리나라 과세관청도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공적 의견에 해당하는 서면 질의와 사적 의견에 해당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제공하고 있음²⁾
 - 그러나 서면질의는 OECD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 적용을 명확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아닌, 개별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운용되는 차이점이 있음

1) OECD, *Tax Administration 2022: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p. 139.

2)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 또한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서면질의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서면질의는 운영상의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 납세자 누구나 거래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어, 처리 건수
와 난이도 등의 영향으로 과세관청의 부담 및 이의 결과에 따른 지연 등이 나타
나고 있음³⁾

- 특히 근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정과 복잡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
산세의 질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이러한 과세관청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 기속력이 있으면서 후속적으로 도입된
사전답변에 대한 선행연구들⁴⁾은 존재하나 서면질의에 대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
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면질의 제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참고
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도모함

○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위치의 납세자에게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단순 법령의 탐색 또는 확인·납세자의 실질과 무관한 질의 등을 배
제하고 법령의 난해한 설계·다수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집중
하여 적시성 있는 확실성을 부여함

3) 송병철,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8., pp. 301~304.; 『일간 NTN』, 「국세청, “세법해석 서면질의를 신속 정확한 회신 위해 최대한 노력”」, 2022. 9. 1,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18>, 검색일자 : 2022. 10. 19.

4) 이경근·김병준,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8; 김수성·박성욱, 「신증금융상품 과세 사례분석을 통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고찰」,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김봉래·홍정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효과」,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등

- 이를 위해 현재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현황을 살펴어 쟁점을 파악하고 다른 주요국의 과세관청의 운영을 살펴보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효과적인 제도를 도출하는 것임
- 다만 현행 조세 관련 법령의 실체법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는 통제변수로 간주함
 - 납세자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령 자체에서 부여하는 것이나 이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령의 실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면질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함

Ⅱ. 서면질의 제도 운영 현황

1. 서면질의 제도 개관

가. 제도 개요

1) 서면질의 제도

- 서면질의 제도는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임
- 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행정기관 또는 국세청과 계약관계인 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자는 민원인이 될 수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함)
 -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경우에 한함)
 -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서면질의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서면질의 신청 시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또한 서면질의서에 명시하여야 함
 - 이때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문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청대상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임
 - 이때 신청대상 세법령이란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의미함
 - 반면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또는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는 신청이 제외되며,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않거나 불복 진행 중인 사항 등을 질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 신청은 허용되거나 답변이 반려됨

〈표 II-1〉 서면질의 제도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서 반려대상

신청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세원관리 또는 조서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경우

자료: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0&cntntslid=7826>, 검색일자: 2022. 10. 18.

- 서면질의서의 제출은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문서 제출을 통해 신청함
- 신청 시에는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표 II-2〉 서면질의 담당 분야별 담당 부서

담당분야	담당부서	
국세기본법 분야 국세징수법 분야	징세법무국	징세과
국세기본법 중 불복청구 분야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국세기본법 중 과세전적부심사 분야		심사2담당관실
부가가치세 분야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 분야		소득세과
현금영수증 분야 (신용카드 포함)		전자세원과
법인세 분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주세, 소비세 분야		소비세과
원천세 분야		원천세과
양도소득세 분야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종합부동산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상속증여세과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자료: 국세청, 「서면질의 처리부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2&cntntsId=7828>, 검색일자: 2022. 10. 18.

[그림 II-1] 서면질의 신청서 서식

서면질의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고시]	
1. 민원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⑤ 전 자 우 편 (E-mail 주소)			
⑥ 주 소 (사 업 장)			
2. 대리인 인적사항			
⑦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민원인과의 관계 :) ※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리인 관리번호			
⑨ 상 호 (법 인 명)		⑩ 성 명 (대 표 자)	
⑪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⑫ 담 당 자 (연 락 처)	
⑬ 전 자 우 편 (E-mail 주소)			
⑭ 주 소 (사 업 장)			
3. 신청내용 (내용이 많은 경우 뒷면 양식에 따라 별지로 기재)			
(뒷면 기재)			
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1.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신청한 경우 공동신청인은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input type="radio"/> 수집·이용 목적 : 고시 서면질의 처리 <input type="radio"/>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 기간 : 영구 <input type="radio"/>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그림 II-1]의 계속

3. 서면질의 신청내용
⑭ 사실관계
⑮ 질의사항
⑯ 관련 규정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⑰ 민원인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2호 서식]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며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함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과의 분쟁 발생 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아니함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과세관청의 일반론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음
 -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전에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야 함
- 서면질의의 문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는 서면질의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통해 문서접수 후 담당자 지정, 중간회신, 처리결과 회신과 관련된 사항을 SMS, E-mail을 통해 안내함

2) 세법해석 제도

- 세법해석 제도는 민원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세법등 해석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임
- 세법해석 제도의 신청 대상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는 국세청장에게 이송됨
- 세법해석 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신청 제외 대상은 세법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임

- 세법해석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는 허용되나 답변이 반려되는 대상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세법 등 해석신청서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세법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세법 등 해석 신청서를 이메일,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세법 등 해석 신청서가 이송·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해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를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함
- ‘세법 등 해석 신청’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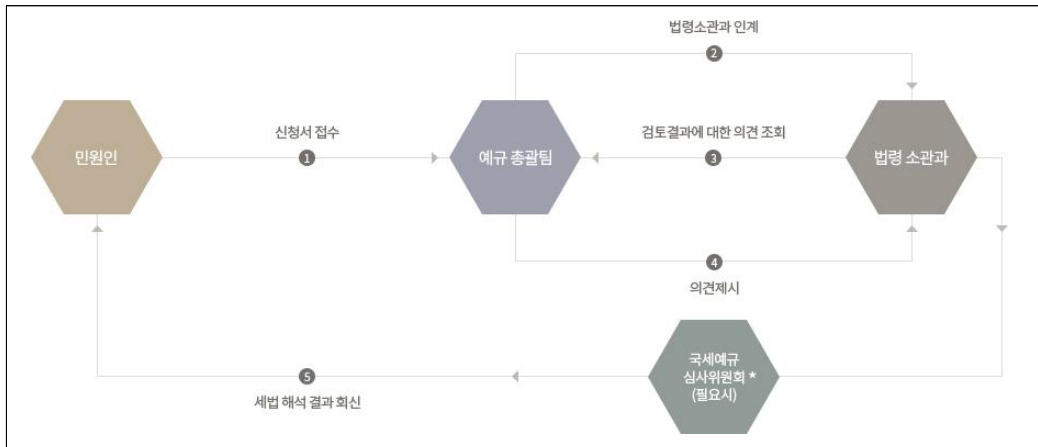
[그림 Ⅱ-2]의 계속

신청내용
⑨ 질의내용(필수 기재사항)
⑩ 사실관계(필수 기재사항)
⑪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필수 기재사항)
⑫ 대상 법령·조항 및 관련 법령·조항(임의 기재사항)
⑬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임의 기재사항)
⑭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임의 기재사항)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질의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신청안내」, <https://www.moef.go.kr/cv/taxlaw/taxlawGuidance.do?menuNo=8120100>, 검색일자: 2022. 10. 19.

- 세법해석 제도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의 예규총괄팀 및 세법 해석이 청구된 해당 세법 법령 소관과에서 청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며, 필요시 국세예규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원인에게 세법 해석에 대한 결과를 회신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사항으로서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및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그림 II-3] 세법해석 제도 처리절차 도식



자료: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신청안내」, <https://www.moef.go.kr/cv/taxlaw/taxlawGuidance.do?menuNo=8120100>, 검색일자: 2022. 10. 19.

나. 관련 법령

1) 서면질의 제도

- 서면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5조의3에서 일련의 관련 사항들을 규정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부터 제14조의8은 민원인과 신청대상 및 서면질의의 신청, 주무국 접수 및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보완 요구, 신청서의 반력을 규정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는 각각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규정과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세법해석 제도

- 세법해석 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와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으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함

다. 운영 현황

- 납세자가 서면질의 작성 시 선택한 세목에 따라 각 담당 부서로 배포하여 담당 부서 내 직원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국세청 내 서면질의 담당과는 법규과이며, 실제 답변은 각 소관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다만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규과에서 처리하거나, 법령의 문리적 해석, 정책의 취지 등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음⁵⁾
 - 즉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하는 세법해석 제도는 민원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세법 등 해석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로, 일정한 경우에 발행됨⁶⁾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분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5)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6)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신청안내」, <https://www.moef.go.kr/cv/taxlaw/taxlawGuidance.do?menuNo=8120100>, 검색일자: 2022. 9. 16.

-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시: 진행 중인 불복 등과 관련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사항)

□ 즉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의회신 제도는 크게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답변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청 서면질의 제도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대한 의문점을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제도임
 -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일반론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나 사실상 외부효력을 가짐
-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전까지 질의하는 제도임
 - 공식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함
-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답변제도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바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거쳐게 됨
 - 드물게 납세자가 기획재정부로 직접 질의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으로 이송되어 국세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상기의 제도 이외에도 국세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관련성

□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 기업 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Advance Ruling 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⁷⁾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납세자들은 서면질의 제도를 통해 일반 서면질의회신 형태로 세법해석 서비스를 이용하였음
- 그러나 일부 서면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가정 설정 등으로 인해 불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또한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세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⁸⁾
-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임

□ 이에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그 목적, 성격 등이 상이함

〈표 II-3〉 국세청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비교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목적	•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 해소	• 민원인이 자신의 개별적·구체적 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세무신고의 적정성 확보
정의	•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	•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 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성격	•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 본인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신청 기한	• 제한 없음(법정신고기한·불복 여부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	•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
신청 대상	•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 해당 납세자의 특정 거래(실제 발생한 거래)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제출 필요

7) 국세청,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간 운영 성과 및 개선방향 -」, 보도자료, 2009. 10. 2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2. 9. 30.

8)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과 발전방안」, 『의회신문』, 2009. 9. 18.,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1161>, 검색일자: 2022. 9. 30.

〈표 II-3〉의 계속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제외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3. 조세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제외대상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5.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제외대상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일반론적 견해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을 구속함(신뢰보호원칙 적용) •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
내용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할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3) •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 •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 • 신청인이 답변내용의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음

자료: 「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487호, 2022. 2. 3.); 국세청,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국세청에 물어 보세요!」, 보도자료, 2010. 10. 1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2. 11.23.;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26&cntntsId=7823>, 검색일자: 2022. 11. 23.

마. 통계

- 서면질의 제도 도입 이후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수요에 의해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관한 질의가 많았으나, 점차 대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도 늘어나고 있고 질의 분야도 국제조세 분야, 소득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⁹⁾
-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양도세와 관련된 질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임

〈표 II-4〉 최근 5년간 연도별 서면질의 현황

(단위: 건, 일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가	질의 건수	807	790	683	673	679	
	처리 건수	합계	678	862	618	408	855
		서면회신	434	528	202	94	206
		상담종결	244	334	416	314	649
	평균 회신일수	91	61	62	105	195	
소득	질의 건수	291	269	274	412	415	
	처리 건수	합계	273	280	218	449	456
		서면회신	64	88	31	37	22
		상담종결	209	192	187	412	434
	평균 회신일수	91	81	93	102	110	
법인	질의 건수	543	413	290	362	440	
	처리 건수	합계	451	461	357	235	609
		서면회신	261	292	224	109	383
		상담종결	190	169	133	126	226
	평균 회신일수	87	107	89	151	137	

9)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과 발전방안」, 『의회신문』, 2009. 9. 18.,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1161>, 검색일자: 2022. 9. 30.

〈표 II-4〉의 계속

(단위: 건, 일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양도	질의 건수	1,040	1,056	1,779	1,763	3,243	
	처리 건수	합계	978	871	1,226	1,817	2,530
		서면회신	222	116	73	94	147
		상담종결	756	755	1,153	1,723	2,383
	평균 회신일수	65	106	108	151	131	
중부	질의 건수	7	10	35	98	208	
	처리 건수	합계	14	5	11	91	145
		서면회신	2	-	-	13	12
		상담종결	12	5	11	78	133
	평균 회신일수	19	-	-	70	103	
상증	질의 건수	449	414	423	368	441	
	처리 건수	합계	304	332	299	461	582
		서면회신	155	132	118	160	219
		상담종결	149	200	181	301	363
	평균 회신일수	51	81	157	138	169	
기타	질의 건수	421	416	505	797	779	
	처리 건수	합계	445	312	500	679	1,011
		서면회신	220	124	149	168	275
		상담종결	225	188	351	511	736
	평균 회신일수	80	79	91	108	140	
합계	질의 건수	3,558	3,368	3,989	4,473	6,205	
	처리 건수	합계	3,143	3,123	3,229	4,140	6,188
		서면회신	1,358	1,280	797	675	1,264
		상담종결	1,785	1,843	2,432	3,465	4,924

주: '상담종결'은 서면회신 이외의 방법으로 민원인의 세법해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것으로, 민원인 질의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해석사례(既 서면회신분) 안내 및 단순세법 문의건에 대해서는 상담 실시·관련 법령 등 안내를 통해 처리한 것임

자료: 국세청 제공

2. 서면질의 제도의 쟁점

- 서면질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내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서면질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어 이에 납세자가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시의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함¹⁰⁾
- 이에 납세자의 적절한 세무행정 이행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비용 또한 낭비될 염려가 있음

〈표 II-5〉 서면질의 신청 건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
신청 건수	2,933	3,558	3,368	3,989	4,473	2,103

자료: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서

〈표 II-6〉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서면질의 건수

접수 후 경과기간	3개월 이내	3~6개월	6개월~1년	1년 초과	합계
서면질의 건수 (비중)	1,056 (36%)	663 (23%)	644 (22%)	557 (19%)	2,920 (100%)

자료: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서

〈표 II-7〉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진행상황 통지 건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통지 건수	15	4	3	11	0	33

자료: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서

- 또한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 훈령으로만 존재함

10) 『연합뉴스』, 「세법해석 요청에 답없는 국세청...“접수 1년 넘은 서면질의 20%”」, 2020. 8. 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50300002>, 검색일자: 2022. 9. 8.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질의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을 구속함
- 반면 서면질의 제도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 표명이므로 사실상 외부효력을 가지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대법 97누4661(2000. 9. 29.) 판결 또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¹¹⁾

1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Ⅲ. 다른 기관 및 주요국의 운영 사례

1. 다른 기관의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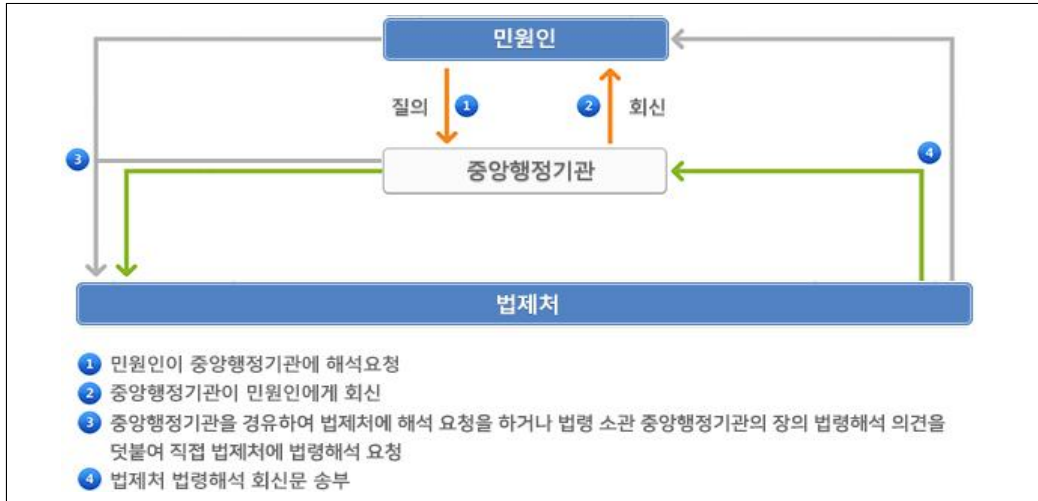
가. 법제처

- 법제처는 법령해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¹²⁾
 -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유권해석'이 됨
 -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에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 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함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음¹³⁾

12)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안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6010000>, 검색일자: 2022. 12. 8.

1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장

[그림 Ⅲ-1]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처리 절차



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 업무처리 절차도」,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Stm/prc>, 검색일자: 2022. 12. 9.

- 법제처 법령해석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이 요청할 수 있음¹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¹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며,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¹⁶⁾
 -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받아야 함¹⁷⁾

1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15)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 요청방법」,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Stm/req>, 검색일자: 2022. 12. 9.

1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제4항

1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7항

- 법제처는 일정한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법령해석 요청 시에는 해석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함¹⁸⁾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등)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인 경우
 - 민원인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과 동일하거나, 민원인 의견이 없는 법령해석 요청인 경우
 - 법무부 소관 법령과 형벌 또는 과태료 규정에 대한 요청인 경우
 -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 법률 또는 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청인 경우
 - 법령조문의 해석이 아닌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경우
 -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경우

- 법령해석 업무처리는 안전접수, 검토, 심의, 회신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¹⁹⁾
 - (법령해석 안전접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에서 접수함
 - (법령해석 안전검토)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에서 담당하며, 질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함
 - (법령해석 안전심의)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
 - (법령해석 안전회신) 법제처장은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여야 함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됨

18)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 요청방법」, <https://www.lawmaking.go.kr/nl4li/lstptStm/req>, 검색일자: 2022. 12. 9.

19)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 업무절차」, <https://www.lawmaking.go.kr/nl4li/lstptStm/prc>, 검색일자: 2022. 12. 9.

- 다만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 등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법제처는 법령해석 회신 시 요청자에게 해당 법령해석은 구속력이 없음을 고지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지함
- 법령해석은 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할 때는 정해진 양식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함
 - 온라인으로 요청 시 요청자는 실명인증 후 법령해석 요청 페이지를 이용함
 - 서면으로 제출하는 요청자를 위하여, 법제처는 서면 법령해석요청서의 하단에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법령해석 요청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법령해석요청서 모범예시를 제공하고 있어, 요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II-2]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서(서면용) 양식

법령 해석 요청서

※ 아래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마지막쪽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법령해석 요청하려는 내용이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

나. 관련 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나. 을설

○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 민원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석요청기관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Ⅲ-2]의 계속

5. 민원인 의뢰 여부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의 의뢰로 중앙행정기관이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 해석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 관련공문을 첨부하십시오.
- ☞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참고자료

-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질의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III-3]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서 양식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요 건	적합	부적합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일 것 * 행정규칙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법령해석요청 가능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요청 권한이 있을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 권한이 없으며, 구의 경우 자치구를 의미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민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닐 것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칙(과태료 포함)조항에 대한 해석일 경우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및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공문)을 첨부할 것. 다만,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한 경우,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공문)를 첨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안에 대해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 구체적 사실관계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가 아닐 것 * 법령해석 진행 중 해당 질의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처에 알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요청서」,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ptStm/doc>, 검색일자: 2022. 12. 9.

2. 주요국의 운영 사례

가. 미국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통칙(Revenue Procedure)에서 다양한 형태의 납세자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Letter Rulings, Closing Agreements, Determination Letters, Information Letters 그리고 Oral Advice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됨²⁰⁾
- Letter Ruling은 Private Letter Ruling(PLR) 또는 Advance Tax Ruling이라고도 하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어떠한 거래에 대해 그 세무상 효과 등과 관련된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 Closing Agreement는 국세청과 납세자 간 특정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임
 - Closing Agreement는 사기, 부정행위, 중대한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이 없는 한 최종적인(final) 결정이므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영구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때에 사용하기에 적절함
 - 납세자는 Letter Ruling을 신청할 때 Closing Agreement를 함께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경우에는 국세청이 Letter Ruling을 발행하는 조건으로서 Closing Agreement 체결을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Determination Letter는 국세청에서 기존에 발표한 원칙 및 사례를 납세자가 질의한 특정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지청장(District Director)의 서면 답변서를 의미함
 - Determination Letter는 법령, 조세조약, 규정, 법원 판결 등에 명확히 제시된 규정을 기반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발행됨

20) Internal Revenue Service, *Revenue Procedure 2022-1*, pp. 8~10.; IBFD, "Advance Tax Rulings and Principles of Law – Books – Part II. Advance Tax Rulings Versus Other Legal Instrume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atr_ch02&refresh=1666590384068%23atr_s_2.1.3., 검색일자: 2022. 9. 8.

- Letter Ruling은 연방 국세청 본부(National Office)에 의해 발행되는 반면 Determination Letter는 지청장(District Director)에 의해 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또한 사전적 성격을 가진 Letter Ruling과 달리 Determination Letter는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함
- 단 납세자가 면세 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성격을 가짐
- Determination Letter는 종업원 복지제도(Employee Benefit Plan)나 조직의 면세 지위 여부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임
- Information Letter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 또는 원칙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임
- 마지막으로 Oral Advice가 있으나 미국 국세청은 Letter Ruling 또는 Determination Ruling을 구두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은 중대한(substantive)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과 구두로 논의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자문(advice)의 개념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음
 - Oral Advice는 우리나라의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상담과 유사한 단순 구두 문의 서비스임
- 미국의 납세자 질의·회신 제도는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제도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서면질의 제도 각각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Letter Ruling 및 Determination Letter는 납세자의 특정한 개별적 상황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과세관청을 구속한다는 점, 거래 수행 전 또는 신고서 제출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반면 Information Letter는 납세자의 특정한 개별적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세

법에 관한 해석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점,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1) Information Letter

- Information Letter는 납세자의 질의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의 적용이 아닌, 세법 규정이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관련한 경우 발행됨²¹⁾
 - 납세자가 Letter Ruling을 요청하였으나 Letter Ruling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IRS는 이를 Information Letter 발행으로 갈음할 수 있음
- Information Letter는 특정 거래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 대상 또한 제한 없이 세법해석에 대한 사항이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임
- Information Letter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또한 IRS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²²⁾
 - Information Letter는 법적 구속력 없이 납세자에 대한 단순 조언 제공의 성격에 가까움
- IRS는 분기별로 Information Letter를 공중에 공개함²³⁾
 - Information Letter 중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음
 -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없이,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Information Letter가 공개 대상이 됨
 - 공중에 공개되기 전 이름, 주소 및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공개됨

21)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Manual*, § 32.3.3 'Information Letters'

22)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Manual*, § 32.3.3.5 'Effect of Information Letters'

23)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Manual*, § 32.3.3.2 'Information Letters to b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 Information Letter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를 IRS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Letter Ruling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보다 빠른 회신을 원하는 경우 “신속회신(Expedited handling)”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Letter Ruling 제도의 신속회신과 관련해서는 다음에서 더 상세히 기술함

2) Letter Ruling(Private Letter Ruling, PLR)

- Letter Ruling은 Advance Ruling 또는 Private Letter Ruling(PLR)이라고도 하며, 납세자의 특정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한 해석을 납세자에게 서면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임²⁴⁾
 - 납세자가 특정 질의회신을 받으려면, 국세청 본청 법무담당관실(Office of Associate Chief Counsel, 워싱턴 소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²⁵⁾
 - Letter Ruling은 Closing Agreement와 함께 제공될 수 있음
 - PLR은 발행 이후에도 IRS의 현행 입장과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IRS에 의해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변경, 미 연방대법원 판결, 임시 또는 최종 규정 발표 등에 의해서도 IRS는 PLR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PLR은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 또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특정 거래에 대하여 연방 세무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 발행됨
 - 즉 거래 수행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실제 일어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라면 PLR 신청이 가능함
- PLR은 대부분의 세무 이슈에 대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경우 IRS는 PLR 발행을 거부할 수 있음²⁶⁾

24) Internal Revenue Service, *Understanding IRS Guidance – A Brief Primer*, 2022. 5. 31., <https://www.irs.gov/newsroom/understanding-irs-guidance-a-brief-primer>, 검색일자: 2022. 10. 18.

25) 오윤-김진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법해석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p. 135.

26) Rev. Proc. 2022-1, section 6.

- 가정을 포함한 상황, 통합된 거래 중 일부만 포함된 경우, 납세자와 관련된 감사 또는 소송과 관련된 경우, IRS가 추후 발행할 규정 또는 기타 발행된 가이드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경우 IRS는 PLR을 발행하지 않음
 - 또한 IRS는 「내국세입법」과 국제조세 분야에서 PLR 발행의 대상이 아닌 분야를 특정하여 이를 목록으로 정하여 매년 1월 발표함
- PLR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요청된 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²⁷⁾
- 미국은 1987년부터 PLR, Determination Letter, APA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유는 1980년대에 질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IRS가 PLR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발행을 거절하는 경우 수수료는 환급됨
- 일반적으로 PLR은 IRS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의존할 수 있는 장치임²⁸⁾
- PLR에 대해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이를 신뢰할 수 있고 이에 의존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PLR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제시된 바대로 실제 거래가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거래가 수행된 기간 중 법률에 변경이 있는 경우 PLR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PLR은 요청한 납세자 이외의 다른 납세자들 또는 IRS 직원에게 선행 사례로서 활용될 수 없음
 - 즉 PLR은 발행된 해당 납세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질 뿐, 그 외의 다른 납세자에게는 구속력이 없음

27) Internal Revenue Service, *Revenue Procedure 2022-1*, pp. 71~85.; IBFD, "Advance Tax Rulings and Principles of Law – Books – Part II. Advance Tax Rulings Versus Other Legal Instrume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atr_ch02&refresh=1666590384068%23atr_s_2.1.3., 검색일자: 2022. 9. 8.

28) Internal Revenue Service, *Revenue Procedure 2022-1*, pp. 64~68.

- PLR은 일반적으로 해당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 이후 공중에 공개됨
- 한편 미국의 Letter Rulings(및 Determination Letters) 제도에는 “신속 처리(Expedited handling)”라고 부르는 패스트 트랙 절차가 있음²⁹⁾
 - 일반적으로 IRS는 접수된 순서대로 질의를 처리하나, 납세자가 신속 처리를 요청 하였으며 해당 질의가 상당한 수의 납세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 의라고 판단되는 경우 IRS는 그 질의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납세자는 Letter Ruling 접수 시에 필요시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의 질의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해야 함
 - 신속 처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Letter Ruling 신청서와 별도의 서면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Letter Ruling 신청서 상단에 ‘신속 처리가 요 청되었음’을 표시해야 함
 - 다만 납세자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요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속 처리 요청의 승인 여부는 IRS의 재량에 달려있음
 - 일반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기한이 납세자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신속 처리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음
 - 주식 가격과 같이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은 신속 처리 승인의 적절한 사 유가 될 수 없음
 - 대부분의 Letter Ruling 요청이 신속 처리될 수 없으므로, IRS는 질의에 대한 회신 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납세자에게 질의대상 거래 수행 및 신고 시점보다 충분 히 앞선 시점에 Letter Ruling을 접수할 것을 독려함

29)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2-1*, 2022. 1. 3., https://www.irs.gov/irb/2022-01_IRB, 검색일자: 2022. 12. 14.

나. 영국

- 영국에는 일반적인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 시스템이 없으나, Statutory clearance 및 Non-statutory clearance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실제 거래를 수행하기 이전에 법령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함³⁰⁾
 - 영국에는 일반세법에 대한 성문법상의 ruling 제도는 없음³¹⁾
- 영국의 Tax clearance 장치는 Statutory clearance와 Non-statutory clearance로 구분할 수 있음³²⁾
 - Statutory clearance는 세법 규정에서 다루지는 특정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며, 특정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반면 Non-statutory clearance는 특정 거래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판단하였음
 - 영국은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납세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영국 국세청(HMRC)에 Non-statutory clearance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한 경우 HMRC는 납세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³³⁾
 - 납세자는 일정한 경우 HMRC에 Non-statutory clearance를 신청할 수 있음
 - 질의대상과 관련된 가이드를 충분히 읽었거나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여 문의하였음

30)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1.html%23cta_uk_s_1.11.7., 검색일자: 2022. 10. 19.

31) 오윤·김진수(2008), p. 143.

32) LexisNexis, "HMRC clearances – overview," https://www.lexisnexis.com/uk/lexispsl/tax/document/393773/58NV-GHF1-F18C-V298-00000-00/HMRC_clearances_overview, 검색일자: 2022. 10. 26.

33) HMRC, *Find out about the Non-Statutory Clearance Service*, <https://www.gov.uk/guidance/non-statutory-clearance-service-guidance>, 검색일자: 2022. 10. 26.

-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
- 세법 법령에 대한 HMRC의 해석이 불확실함
- 반면 영국 국세청은 일정한 경우 납세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 납세자가 HMRC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 납세자가 제기한 세법해석의 불확실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 납세자가 HMRC에 세무설계(tax planning)와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세무설계 상품 및 계약을 ‘승인(approve)’받고자 질의함
 - 납세자의 질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함
 - HMRC가 해당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임
 - 질의대상 거래의 세무신고가 이미 완료되었음
 - 질의대상 거래에 대한 Statutory clearance가 존재함
- Non-statutory clearance 신청 시 신청인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부록A)를 함께 첨부해야 함³⁴⁾
 - 기본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 거래에 대한 정보, 거래를 수행하는 상업적 이유(commercial rationale), 요청하고자 하는 쟁점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함
 - 또한 질의대상 거래에 특정 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HMRC가 발행하는 가이드나 매뉴얼, 판례 등을 통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추가하여야 함
 - 납세자는 신청 시 ‘부록A - 체크리스트’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그림 III-4] 참조)
 - 부록A의 1번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tion’ 항목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납세자 식별번호, 연락처 등에 대해 기재하였는

34) HMRC, *Find out about the Non-Statutory Clearance Service*, <https://www.gov.uk/guidance/non-statutory-clearance-service-guidance>, 검색일자: 2022. 10. 26.; LexisNexis, “HMRC clearances – overview,” https://www.lexisnexis.com/uk/lexispsl/tax/document/393773/58NV-GHF1-F18C-V298-00000-00/HMRC_clearances_overview, 검색일자: 2022. 10. 26.

- 지 확인하며, 신청대상 질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부록A의 2번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s’ 항목에서는 질의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부록A의 3번 ‘Information about legal points’ 항목에서는 납세자가 생각하는 질의대상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 해당 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해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부록A의 4번 ‘Tax avoidance schemes’ 항목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납세자는 부록A의 하단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로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함
- 단 HMRC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편보다는 이메일 전송을 권장하고 있음

[그림 III-4] 영국 Annex A – Checklist for clearance service 양식

Annex A – checklist for clearance service

It helps us if you follow the order set out in this checklist in your clearance application and use the numbering on any supporting documents.

PLEASE ENSURE THAT YOU ATTACH A COPY OF THE CHECKLIST TO YOUR APPLICATION.

1.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tion:	Check
1.1 Your name and address or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carrying on the business (and name of the business if different)	
1.2 Your relevant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in full, for example National Insurance Number, Unique Taxpayer Reference (UTR) or VAT Registration Number.	
1.3 Your contact details (if you are acting on behalf of a client) and authority to act for the client where it has not yet been sent to us	
1.4 A brief ind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application. Fuller details should be provided under the appropriate headings below	
2.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s):	Check
2.1 The details of which taxes the application refers to	
2.2 The reasons for undertaking the transaction	
2.3 The relevant facts about the transaction, set out chronologically as transaction steps, so that we have enough information to provide the clearance response, for example what was supplied, price, contract terms etc.	
2.4 Set out your view of the tax conseque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issues you want us to consider	
2.5 The proposed date of the transaction if it has not yet happened	
2.6 For VAT related requests, the monetary value of the transaction	
3. Information about legal points:	Check
3.1 Outline the specific legislation which you think applies	
3.2 Explain why you believe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is open to different possible interpretations, provide a summary of thos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explain why the tax consequences are uncertain, including reference to our published guidance and/or to case law	

[그림 III-4]의 계속

3.3 Provide copies of any legal advice you have already received which you are content to disclose	
3.4 Provide details of any other relevant advice you are seeking or have previously sought from HMRC to include related clearances (statutory or otherwise)	
4. Tax avoidance schemes:	Check
4.1 If there is a tax avoidance scheme which covers all or part of the transaction you must provide details of any disclosure made to HMRC with the allocated DOTAS scheme reference number, if applicable	

We will be able to process your application more efficiently if you send your clearance application by email. Please send your application to:
nonstatutoryclearanceteam.hmrc@hmrc.gov.uk

Attachments to emails should be no larger than 2 MB. Please do not send self-extracting zip files as our software will block them.

Using email

- HMRC cannot guarantee the security of emails you send to us or we send to you over the internet. Any information you send us by email is at your own risk. The main risks associated with using email that concern HMRC are:
 - Confidentiality/privacy - there is a risk that emails sent over the internet may be intercepted
 - Confirming your identity
 - There is no guarantee that an email received over an insecure network, like the internet, has not been altered during transit
 - Attachments could contain a virus or malicious code
- It is important that you have assessed the risks of using email to send information or to receive it from us.
- If you would like us to reply by email, please tell us so and confirm that you understand and accept the risks involved in using email. We will not always be able to reply by email.

Alternatively, you may post your application to:

**HM Revenue and Customs
 Non Statutory Clearance Team S0563
 5th Floor, Saxon House
 1 Causeway Lane
 Leicester
 LE1 4AA**

자료: HMRC, “Annex A – Checklist for clearance serv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7451/Annex_A.pdf, 검색일자: 2022. 10. 26.

- 일반적으로 HMRC는 질의에 대해 28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나,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³⁵⁾
 -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HMRC는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예상 답변 제공 일자를 함께 통보함
 - 부가가치세 관련 Non-statutory clearance의 경우 현재 평균적으로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HMRC의 답변은 세무신고 또는 납부 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HMRC로부터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즉 거래 수행 이후에 질의하였으나 신고기한 이전까지 HMRC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세무신고 이후 HMRC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영국 법원은 일부 Non-statutory clearance에 대해 HMRC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³⁶⁾
 - 이에 HMRC는 쟁점 사안에 대한 법률 해석에 확실성이 부재하거나 이전가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clearances를 제공하는 것을 꺼림(reluctant)
 - 질의대상 사안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대해 확실성이 없는 경우 Non-statutory clearance를 발행하지 않으려 함

- 납세자가 HMRC의 답변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HMR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5) HMRC, *Find out about the Non-Statutory Clearance Service*, <https://www.gov.uk/guidance/non-statutory-clearance-service-guidance>, 검색일자: 2022. 10. 26.

36)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1.html%23cta_uk_s_1.11.7., 검색일자: 2022. 10. 19.

- 답변서에 기재된 국세청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
- Non-statutory clearance가 공중에 공개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다. 일본^{37), 38)}

1) 개요

- 일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전에 「구체적인 거래 등에 관한 세무상의 취급」에 관해, 문서에 의한 회답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사전 조회)을 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의 문서에 대해 회답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 조회 및 회답의 내용 등을 공표하는 문서 회답(文書回答) 제도를 실시함
- 조회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신고 기한 등의 전에 조회하는 경우의 문서 회답 수속은 「개별 문서 응답 절차(個別文書回答手続)」라는 명칭을, 동업자 단체 등이 산하의 구성 사업자등에 공통되는 거래등에 대해서 조회하는 경우의 문서 회답 수속은 「일반 문서 회답 수속(一般文書回答手続)」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2) 문서회답 대상

- 사전 조회 가능 대상은 사전 조회자가 직접 실시한 거래 또는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거래 등에서 개별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 기타 세무상 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법령해석통달 등에 의해 그 취급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함

37) 일본 국세청, 「事前照会に対する文書回答手続」,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01.htm>, 검색일자: 2022. 10. 11.

38) 일본 국세청, 「よくあるご質問とその回答」,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gaiyo02/04.htm>, 검색일자: 2022. 10. 11.

- 구체적으로는 거래 등에 관한 국세의 신고 기한 전(원천 징수 등의 경우는 납부 기한 전)의 사전 조회이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며 조회 내용 및 회답 내용의 공표 및 조회 내용 등의 공표 등에 수반한 불이익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조회자의 책임에 있어 관계자 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 동업자 단체 등으로부터의 조회(그 구성원 등이 실시하는 거래 등에 관한 세무상의 취급에 대한 조회에 한정)에 대해서도 문서에 의한 회답이 가능하며, 그 조회 및 회답의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표함
- 다만 ① 조회의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선택사항이 있는 것 ② 조사, 징수 절차, 주류 행정에 관계하는 것 ③ 개별 재산의 평가나 거래 등가액의 산정·타당성의 판단에 관한 것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을 할 수 없고 실질확인이나 관계자에게 조회 등에 의한 사실관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 ⑤ 그 외 문서 회답 수속의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문서 회답 조회의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것(국가 등에 대한 재산의 기부 등에 대한 양도 소득 등의 비과세 승인에 관한 사전 확인 등)>, <양도 소득 등에 관한 수용 등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전 협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의 사전 확인>, <독립 기업 간 가격의 산정 방법 등의 확인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접수함
- 실무적으로 문서 회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서 회답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내용을 심사하여 구두 회답이 가능한 사전 조회에 대해서는 구두 회답을 실시함

3) 신청 절차

- 문서 회답 절차에 의한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에 비치한 양식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을 인쇄해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접수 창구에 제출함

- 이때 제출지는 개별 문서 회답 절차의 경우 조회자의 납세지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일반 문서 회답 절차의 경우 동업자 단체 등의 주된 사무소를 담당하는 국세국의 심리과가 됨
 - 단 국세국 조사부(과) 소관 법인이 실시하는 법인세 및 소비세의 사전조회외의 경우 그 법인을 소관하는 국세국의 조사심리과(조사관리과, 조사과)에, 주세의 경우 제조장 등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국 소관의 경우는 관할 국세국의 주세과)에, 간접제세(인지세 제외)에 관한 조회의 경우 제조장 등 소재지 관할 국세국의 소비세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

- 조회의 신청 시에는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법령해석·적용상의 의의의 요약 및 이에 대한 조회자의 견해 (2) 조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계약서 등의 모든 관계 서류 (3) 조회자의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학설, 재판례 등) (4) 체크 시트 (5) 그 외, 조회 내용에 따라 참고가 되는 서류 등을 제출함
- 아울러 담당 부서는 조회 내용에 따라서 조회의 신청 후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체크 시트는 조회 내용이 문서 응답의 대상이 되는 주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회자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국세 당국이 형식 면에서 심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또한 체크 시트에는 문서 응답의 대상이 되는 요건 중, 주요한 것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체크 시트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그림 III-5]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치 양식(별지 1)

별지 1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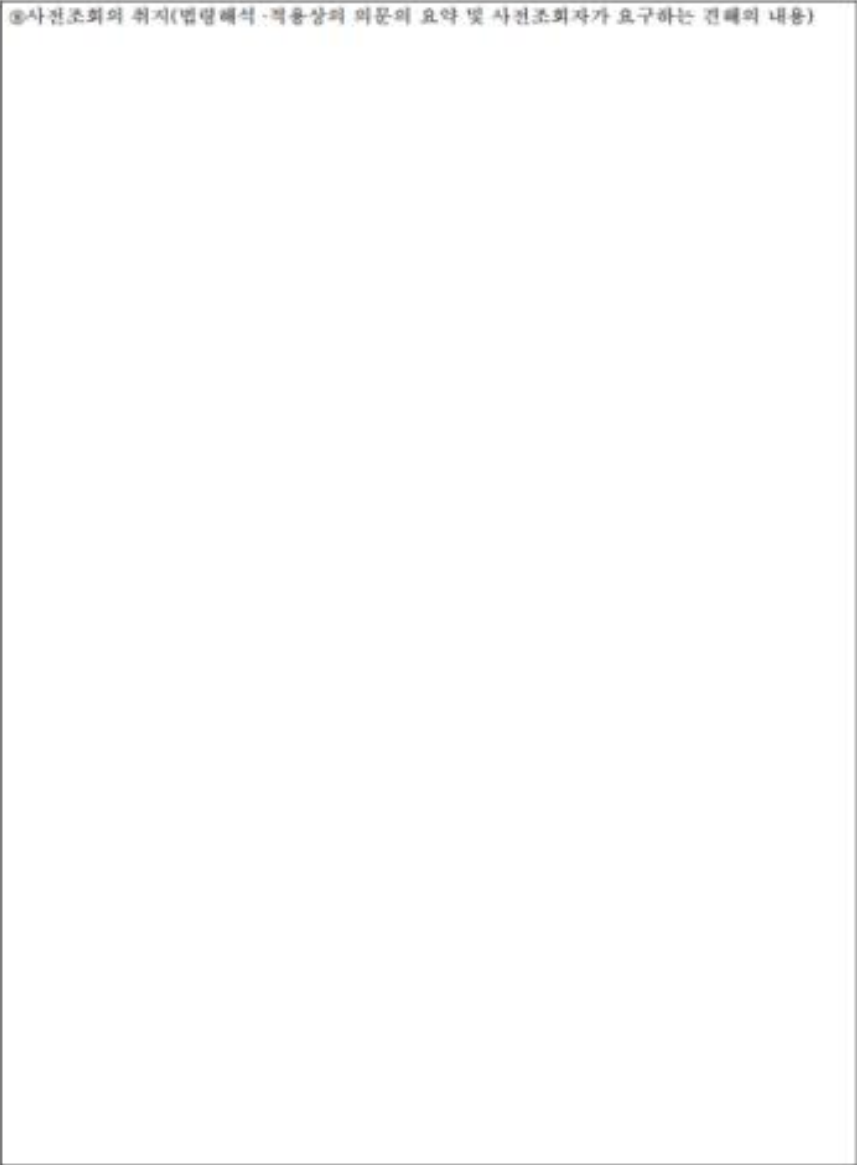
		① 신청서번호			
레이와 닌 율 일 세무사정용 국제국 실리카알(실리칸) 주 재 과 장	사 회 조 회 자	② 주소·소재지 (납세지)			
		③ (후리가나) 상 명·명 칭	()	전화 번호	
		④법인 번호			
		⑤ 법인 주요대표 자 등	주소·거소 (후리가나) 지책·성명	()	전화 번호
		⑥대 리	주소·거소 (후리가나) 지책·성명	()	전화 번호
Ⓜ동지사향 등 다음 거래 등과 관련된 국제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기타 세무상의 취급 등에 대해서 다음의 「사전조치의 취지」 대로의 견해가 무관한지 문서에 의한 회답을 받고자 조희합니다. 덧붙여 이 사전 조치에 관해서 불무한 자료 의 에 질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일본이 이외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일본이 번역문의 제공을 요 구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에 응합니다. 또한 사전조치자는 다른 납세자에 대해서도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희내용 및 답변내용이 일면에 공표될 것, 공표에 관해 거래 등 관계자의 향래를 구할 것, 일일 관계자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조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⑦ 사전조치의 취지 (법령해석·적용 상의 위문의 요약 및 사전조치자가 요 구하는 견해의 내용)		별지 1-1 대로			
⑧ 사전조치와 관련된 거래 등의 사실 관계(거래 등 관계자의 명칭, 거래 등 예시의 권리·의무관계 등)		별지 1-2 대로			
⑨ ⑧의 사실관계에 대해 사전조치자 가 주장하는 견해가 타당한 이유		별지 1-3 대로			
⑩ 거래 등과 관련된 국제의 신고기관 등		연 월 일			
⑪ 관련된 법령 조항 등					
⑫ 첨부서류		1 대리인에 의한 사전 조희의 경우 그 위임장 2 체크시트(별지 1-4) 3 조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의 조희사항에 관련된 참고 자료 [
(주의사항) 1 사전조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문서 회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조희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일 등을 이유로 신고기관이나 납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3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일본국세청, 「사전조치 양식」,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yoshiki/02.htm>, 검색일자: 2022. 10. 11., 저자 번역

[그림 Ⅲ-6]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1)

별지 1-1

④사전조회외 취지(법령해석·적용상의 의문의 요약 및 사전조회자가 요구하는 견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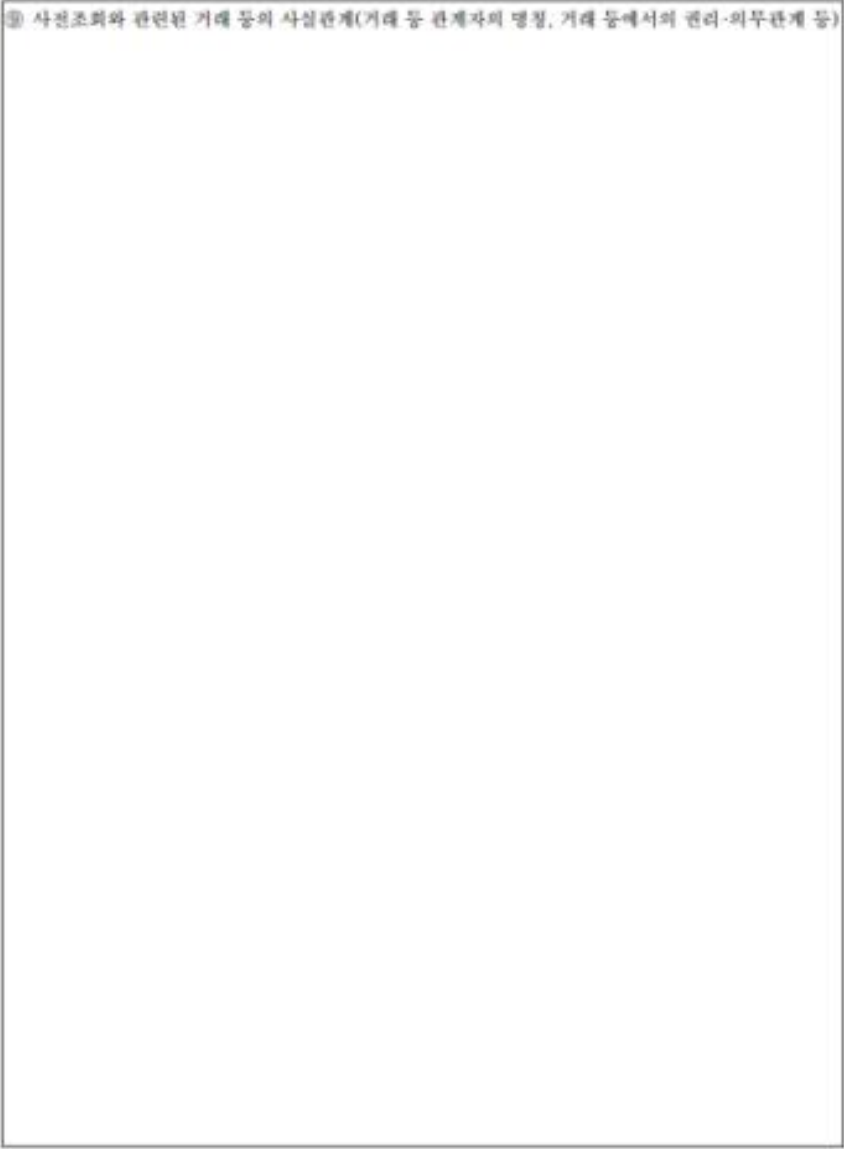


자료: 일본국세청, 「사전조회 양식」,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yoshiki/02.htm>, 검색일자: 2022. 10. 11., 저자 번역

[그림 Ⅲ-7]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2)

별지 1-2

① 사전조회와 관련된 거래 등의 사실관계(거래 등 관계자의 명칭, 거래 등에서의 권리·의무관계 등)



자료: 일본국세청, 「사전조회 양식」,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yoshiki/02.htm>, 검색일자: 2022. 10. 11., 저자 번역

[그림 Ⅲ-8]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 양식(별지 1-3)

별지 1-3

㉞ ㉞의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전조회자가 주장하는 견해가 타당한 이유(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사례, 판례, 학설 및 이미 공표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견해를 포함)



자료: 일본국세청, 「사전조회 양식」,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yoshiki/02.htm>, 검색일자: 2022. 10. 11., 저자 번역

[그림 III-9] 사전조회 양식 체크리스트(별지 1-4)

별지 1 - 4

체 크 리 슷 트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용)

이 체크리스트는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 취급 등에 관한 사전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전조회 내용 등이 문서에 의한 회답 대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조회 문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항 목	비 고
01) 사전조회자가 실시하는 거래 등과 관련된 조회이다.	예 · 아니오
02) 공제(관세, 관세 및 특별공제)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법령(법령의 개정과정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해당 적용 기타 세무상 취급에 관한 조회이다.	예 · 아니오
03) 신고기한(원천징수 등의 경우는 납기한)의 조회이다.	예 · 아니오
04)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등 또는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거래 등에서 개별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과 관련된 조회이다.	예 · 아니오
05) 조회의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선택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 아니오
06) 사전조회 신청 시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예 · 아니오
07) 조회 내용 실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나 변경된 제출에 동의한다.	예 · 아니오
08) 조회내용 및 답변내용이 공표되는 것에 동의한다.	예 · 아니오
09) 조회내용 및 답변내용이 공표되는 것에 대하여 거래 등 관계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 및 만일 거래 등 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조회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예 · 아니오
10) 조사 등의 절차, 징수절차, 부류 등의 제호면이나 부류의면(영업면) 또는 부류명 결과 관련된 조회가 아니다.	예 · 아니오
11)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의 취급 등이 법령, 법령 해설 등산 또는 과거에 공표된 질의사례 등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예 · 아니오
12) 개별 계산의 절차나 거래 등거래 산정에 관한 조회가 아니다.	예 · 아니오
13) 사전조회와 관련된 거래 등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거나 저촉의 우려가 없는 것이다.	예 · 아니오
14) 사전조회와 관련된 거래 등에 관하여 관계자 간 등에서 분쟁 등이 아니거나 분쟁의 우려가 없다.	예 · 아니오
15) 법령의 조항된 거래 등의 사례 중 일부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다.	예 · 아니오

* 이 체크 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 문서에 의한 회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등의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사 건	주소 또는 주소지	
조회자	이름 또는 명칭	

자료: 일본국세청, 「사전조회 양식」,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kobetsu/bunsho/yoshiki/02.htm>, 검색일자: 2022. 10. 11., 저자 번역

4) 사무 처리

- 문서 응답 절차에 따라 조회를 접수한 후 담당 부서가 사무 운영 지침에 정해진 요건을 보고 문서 회답의 대상이 되는 조회인지 등의 심사를 행하므로, 그 심사의 결과 경우에 따라 문서 응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 회답의 대상이 되는 사전 조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작성해 사전 조회자에게 송부하며, 심사 중에 문서 회답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경우 「사전 조회에 대한 문서 회답 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내용의 통지」를 송부함

- 회답은 접수 창구에서 접수한 날부터 원칙 3개월 이내(심사에 필요한 추가적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 문서의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에 실시하도록 노력함
 - 접수 창구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1개월(심사에 필요한 추가적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 문서의 보정에 요한 기간을 제외) 이내에 지금까지의 검토 상황부터 본 문서 응답의 가능성, 처리의 시기의 전망 등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음

- 문서 회답은 조회 문서에 기재된 사전 조회자의 견해에 대해 「귀하의 의견대로 시행하여도 지장이 없습니다」 또는 「귀하의 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행됨

5) 공표

- 문서 회답을 행하는 경우에는 조회 내용 및 회답 내용을 원칙으로서 회답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나, 사전 조회자의 신청에 의해 최장 1년간은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서 회답이 완료된 후 조회자명에 대해서는 조회자의 공표 신청이 없는 한 공표되는 일은 없으며, 조회 문서에 기재한 내용은 그대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자와 담당부서가 상의함

- 단 동업자 단체 등으로부터의 조회에 대해서는, 조회자명도 공표됨
- 신고 기한이 도래하여 조회 사항에 관련된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제출된 신고서 등에 근거해 국세 당국이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결정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납세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서 회답 절차에서 신고기한 후의 회답은 하지 아니함

6) 법적 효과

- 문서 회답 절차는 납세자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이 사전 조회자의 신고 내용 등을 구속하는 성격의 것이 아님
 - 따라서 사전 조회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이유로 국세의 신고 기한 등이 연장되지 않고, 회답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나 국세의 신고 기한 등까지 회답을 행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라도, 불복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라. 호주

1) 개요

- 호주는 ATO의 조언·지침과 관련하여 공적 결정(public ruling), 제작 결정(product ruling), 집단 결정(class ruling), 사적 결정(private ruling), 조언을 위한 사전 협의(Early engagement for advice), 구두 결정(oral rulings)을 운영하며, 이 중 서면으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는 제도는 집단 결정(class ruling), 사적 결정(private ruling), 조언을 위한 사전협의(Early engagement for advice)임
 - 구두 결정(oral rulings)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또는 메디케어 부담금과 같은 법률 분야에서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조항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개인 납세자에게 전화로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언의 한 형태임

- 따라서 해당 장에서는 주요국의 서면질의에 관련한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집단 결정과 사적 결정, 조언을 위한 사전 협의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함

2) 집단 결정(class ruling)³⁹⁾

- 집단 결정은 공공 판결의 한 종류로서, 세법의 관련 조항이 특정한 계획에 대한 특정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제도임
 - 호주 국세청은 이러한 집단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예시로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 대한 조기 퇴직 제도의 세금 결과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회사가 구조 조정, 주식 분할 또는 통합, 분할 또는 주식 자본 반환의 주주에 대한 세금 결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 등을 제시함
- 집단 결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관련된 단체들의 이름 및 그 계획의 명칭과 설명, 참가자가 당사자인 계약, 행위 및 거래에 대한 설명을 밝혀야 함
 - 그뿐만 아니라 청구된 집단 결정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의 집단 결정 청구와 관련된 명시적 동의 획득 또한 필요함
- 호주 국세청은 집단 결정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경미하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frivolous or vexatious), 판결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제공된 자료가 일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추가 정보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나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에 응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함⁴⁰⁾

39) ATO, "Class-rulings,"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 검색일자: 2022. 10. 15.

40) ATO, "When-we-would-not-give-a-class-ruling,"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When-we-would-not-give-a-class-ruling/](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When-we-would-not-give-a-class-ruling/), 검색일자: 2022. 10. 15.

- 경미하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frivolous or vexatious)의 예시로는 해당 청구에 대한 사안이 가설일 뿐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제도가 개정되어 적합한 법령이 없는 경우를 들
 - 판결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예시는 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정을 한 경우, 조세 회피와 관련한 경우,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임
 -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나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에 응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는 해당 해석 요청사안이 장기적이고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의 경우, 이전에 발행된 공개 판결이 문제에 충분히 적용되는 경우, 법적 또는 기타 정부 요건(예: 정관, 면허, 승인)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만료되었거나, 철회되었거나,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됨
- 집단 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단 결정 신청서(class ruling application form)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집단 결정 신청서에는 집단 판결이 적용되는 법인의 전체 이름, 판결의 영향을 받는 법인의 수와 등급 및 적용 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 판결이 요청된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 등이 기재되어야 함

〈표 III-1〉 집단 결정 신청서 기재 사항

- 집단 결정 대상 기관의 전체 이름, 세금 파일 번호(TFN), 호주 사업자 번호(ABN) 및 주소
- 당사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집단 결정이 적용되는 실체와 다른 경우)
- 판결의 영향을 받는 실체의 수와 집단 그리고 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
- 신청자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이전에 이 주제 또는 유사한 사실을 가진 주제에 대해 집단 결정 요청을 제출했는지 여부
-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의 세부사항 및 계획에 언급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계획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
- 그 계획에 부여된 명칭(관련이 있는 경우)
- 판결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된 질문과 답변을 원하는 문제
- 신청서를 세무 전문가가 제출하였는지 여부
- 판결이 요구되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
- 저널 및 교과서 해설, 사례 인용 및 공개 판결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세무 전문가의 경우 청구인의 추론과 함께 질문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공된 연구에 따라)
 - 청구인이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생각하는 해당 청구 사항의 이행 방식
- 모든 증빙 서류

자료: ATO, "Applying-for-a-class-ruling,"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Applying-for-a-class-ruling/](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Applying-for-a-class-ruling/), 검색일자: 2022. 10. 15.

집단 결정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승인되고, 그러한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팀이 배정됨

- 집단 결정과 관련한 문의의 해결이 완료되면 ATO는 집단 판결문을 발표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집단 판결문 초안 사본과 일정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이 필요한 자가 진술서를 송부함
 - 해당 진술서는 신청자가 집단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모든 관련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며, 집단 결정에 의해 결정된 해설의 공개 날짜는 조율 가능하고 클래스 판결문 초안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있는 조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임
- 집단 결정은 공공 결정(public ruling)의 일종이기 때문에⁴¹⁾⁴²⁾ 해당 결정은 호주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binding ruling)이 있음
 - 집단 결정에 대한 사안은 집단 결정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하고 그 통지문이 관보에 실린 후에 공신력을 얻어 납세자는 집단 판결문에 의존할 수 있음

3) 사적 결정(private ruling)⁴³⁾

- 사적 결정(private ruling)은 특정 계획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세법이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시하는 구속력 있는 지침(binding advice)임
- 사적 결정은 납세의무, 관리, 절차 및 징수, 특정 사례에 대한 사실판단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세법의 관련 조항의 적용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 ATO는 청구인의 특정 문제에 관해 이미 고려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거부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한 경우 사적 결정에 대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41) ATO, "Class-rulings,"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Class-rulings/), 검색일자: 2022. 11. 10.

42) ATO, "Public-rulings,"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Public-rulings/](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Public-rulings/), 검색일자: 2022. 11. 10.

43) ATO, "Private-rulings,"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Private-rulings/](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Private-rulings/), 검색일자: 2022. 11. 10.

- 또한 청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적시에 청구인이 그러한 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적 결정을 청구한 사안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무의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사적 결정에 대한 청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사적 결정은 본인, 대리인 또는 법적 개인 대리인인 경우 다른 실체(개인 포함)의 사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사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대리 청구, 파트너십을 대신한 파트너의 청구, 신탁을 대신하는 수탁자의 청구 또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적 결정은 청구자가 ATO가 내린 사적 결정에 따른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 만약 청구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적 판결에 의존한다면(사적 판결의 결과, 납세의무가 더 적거나 보조금이나 복리후생비 금액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클 경우) 나중에 그러한 사적 판결의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ATO는 그 결정에 구속됨
 - 구속력 있는 판결의 효과는 판결이 부정확하더라도 청구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범칙금과 이자부담금 또한 부과되지 않음
 - 만약 사적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ATO는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때에만 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음
 - 반면 청구인이 사적 판결에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청구인이 채택한 입장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청구인은 과소 납부된 세금을 내거나 초과 납부된 보조금이나 혜택을 상환해야 함
- 사적 결정은 그것과 관련하여 청구된 특정한 계획이나 상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제도와 실제 발생하는 것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판결은 적용되지 않음
 - 즉 사적 결정 청구 시 진술했던 계획이 사적 결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들이 사적 결정 신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사적 판결이 적용되지 않음

- 사적 결정 신청서는 세무 전문가(tax professionals)와 비전문가(not for tax professionals) 용 양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양식의 내용은 세무 전문가용 양식에는 세무 전문가 번호(tax agent number)를 기재하거나 판단에 대한 질문 항목에 '사적인 판결의 범위를 특정 조항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 우리가 판결하기를 원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시하십시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음

- 사적 결정은 특정 단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신청한 자에 대한 한정적인 판결을 내리므로, 각각의 사적 결정에 대한 결과는 사적 결정 청구인의 사례에 한정하며 다른 납세자에 의해 신뢰될 수 없음(can't be relied on by another entity)

- ATO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사적 판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판결을 제공하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을 청구자에게 알려야 함
 - 사적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ATO는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이 유효한지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통보함
 - 신청자의 요청이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복잡한 문제인 경우 ATO는 기한을 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0일 이내에 사적 결정이나 사적 판결을 거부하는 서면 사유를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사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사적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적 결정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요청이 간단한 경우 전화로 연락할 수도 있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 요청서를 서면으로 송부함
 -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28일을 제공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ATO는 사적 결정 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 ATO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알리고 해결을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함
 - 이러한 추가 문제에 대한 ATO의 사적 결정을 원하면 추가 사적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ATO가 사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판결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음
 - 청구인이 가치평가에 관해 문의했고 이를 평가자에게 의뢰한 경우, 또는 ATO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문의의 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보류될 수 있음

- ATO가 내린 사적 결정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와 같은 방식(in the same way you can object to a tax assessment)으로 대부분의 사적 판결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적 결정과 관련된 세무상 평가가 완료되었거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기일이 도래한 경우, 소비세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소비세 또는 소비세와 관련한 기타 금액에 대한 결정을 ATO가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적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상 평가를 대상으로 이의제기하여야 함

- ATO는 최초의 사적 결정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소득연도 또는 회계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적 판결(간접세 또는 소비세 판결 제외)을 개정할 수 있음
 - 그러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만 사적 결정을 개정할 수 있음

- 간접세와 관련한 경우에는 사적 판결에 대해 언제나 개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음
- ATO는 ATO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발행하는 모든 구속력 있는 서면 조언의 편집된 버전을 게시하여 사적 결정 시스템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식 조언임을 확인함
 - 조언은 신청자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편집되며 신청자는 편집된 버전이 게시되기 전에 검토할 기회가 있음

4) 조언을 위한 사전 협의(Early engagement for advice)⁴⁴⁾

- 호주 국세청은 개인, 공공사업체, 비영리단체,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해결할 수 없는 세무상 문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위한 사전 협의(Early engagement for advice)라는 명칭의 질의제도를 운영함
 - 그중 개인을 대상으로는 복잡한 조언 요청(complex advice request)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함
- 조언을 위한 사전 협의제도는 재정, 개정된 법률에 대한 조언, 복잡한 세법 문제, 세법 법률 해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 개인에 대한 복잡한 조언 요청은 ATO 홈페이지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우편으로 보낼 경우 해당 페이지를 인쇄 후 작성하여야 함
 - 복잡한 조언은 확인된 연락처에만 발행되므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연락처 세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해당 문의 사항에 대한 증거 또는 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음

44) ATO, "Early-engagement-for-advice," [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Early-engagement-for-advice/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https://www.ato.gov.au/General/ATO-advice-and-guidance/ATO-advice-products-(rulings)/Early-engagement-for-advice/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 검색일자: 2022. 11. 10.

[그림 III-10] 복잡한 조언 요청 신청 페이지

*** compulsory fields**

Section A: Contact details

Client name the advice relates to *

Who is the contact person for this request? (Include title and full name) *

Are you a Tax professional? *

If 'Yes' enter your TAN/PAN here, if 'No' place the word no in this field:

Contact 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

Email address *

Section B: Issue details

Main topic *

(select most appropriate)

Am I a resident

Am I carrying on a business

Capital gains tax

[그림 Ⅲ-10]의 계속

Crypto assets
 Income (including foreign income)
 Deductions (including Work related expenses)
 GST
 Superannuation
 Topic not listed

What self-help interactions have you had? *
(select all that apply)

In.gov.au
 Alex
 Legal database
 ATO contact centre
 ATO Community
 Tax professional advice
 Other professional advice

Provide any ATO reference ID relating to this query (if applicable)

Describe the complex issue and/or questions that you are seeking advice on? *
(provide sufficient detail to describe your issue)

자료: ATO, "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 <https://www.ato.gov.au/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 검색일자: 2022. 11. 10.

- 일부 문의 사항에서 사안에 따라 전화로 질문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더 적합한 경우 신청자에게 전화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며, 해결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상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신청 요건이 간소하고 양식 또한 ATO 홈페이지상에서 기재하여 제출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제공되는 지침(구두 또는 서면)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않음⁴⁵⁾

마. 독일

- 독일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제89조 제2항에 따라, 세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연방중앙국세청(BZst,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에서 납세자의 세법 질의를 해결하고 있음⁴⁶⁾
- 납세자들의 상황에 따른 법령 적용에 신뢰성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질의회신은 구속력의 유무로 나뉨
 - 구속력이 있는 판결 및 요청의 경우 연방중앙국세청 절차에 따라 세무관청이 처리하며, 연방중앙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lster(Elektronische Steuererklärung)에서도 구속력 있는 정보 요청이 가능함
 - 구속력이 없는 정보 요청 및 단순 질의는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 세무서나 연방재정상황원에 요청할 수 있음

45) ATO, "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 <https://www.ato.gov.au/individuals---complex-advice-request/>, 검색일자: 2022. 11. 10.

46) 독일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bzst.de/DE/Unternehmen/VerbindlicheAuskuenfte/verbindliche_auskuenfte_node.html, 검색일자: 2022. 12. 15.

1) 구속력 있는 정보신청(Verbindliche Auskunft)

- 질의 회신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구현되지 않은 납세 문제 및 특정 사례의 급여과세 및 외부 감사 후 상황에 따른 세금 판결에 대한 확약 신청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개인, 법인, 기업가 모두 질의가 가능하고 「국세기본법」(AO) 제80조에 따라 법률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음⁴⁷⁾
- 연방중앙국세청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질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시행에 따라 세무관청 정보제공 규정 (Steuer - Auskunftsverordnung - StAuskV)을 준수해야 함⁴⁸⁾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시 개인(자연인)의 경우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세금식별번호(Steuernummer)⁴⁹⁾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질의할 세금 관련 설명은 사실과 다름없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요청한 법적 질의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해야 함
 - 제출한 신청인의 모든 정보와 판결에 필요한 정보라는 사실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전 심사 신청 처리에는 신청인의 실제 납세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고, 해당 수수료의 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됨
 - 「국세기본법」(AO)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구속력 있는 정보 제공의 신청의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신청인에게 일괄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수료만을 부과함⁵⁰⁾

47) 「Abgabenordnung」 § 80, 독일 「국세기본법」 제80조, 검색일자: 2022. 12. 15.

48) 「Abgabenordnung」 § 80, 독일 「국세기본법」 제89조, 검색일자: 2022. 12. 15.

49) 세금번호(Stuer Steuernummer)란 연방세무서가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 발급하는 번호임

50) 「Abgabenordnung」 § 80, 독일 「국세기본법」 제80조, 검색일자: 2022. 12. 15.

- 신청인은 수수료 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관청은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신청에 관한 결정을 보류할 수 있음
- 수수료는 「법원비용법」(Gerichtskostengesetz) 제34조를 준용하여 수수료율 1.0% 부과함⁵¹⁾
 - 수수료는 신청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정보가 갖는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상의 가치가 1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납세자의 대상의 가치 여부 결정 및 대략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시간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함
- 상황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부당한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세무관청이 결정을 통지하기 전, 구속력 있는 정보 제공의 신청이 취소될 경우와 과세당국이 해당 요청을 처리한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세무행정포털 Elster(Elektronische Steuererklärung)를 통한 구속력 있는 정보 신청이 가능하며,⁵²⁾ 「국세기본법」 제8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부과되고 Elster를 통한 온라인 요청은 튀링겐(Thüringen) 주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온라인 포털을 통한 구속력 있는 정보 요청은 Elster 가입자만 가능함
- 납세자는 Elster에서 「국세기본법」 제204조(Voraussetzung der verbindlichen Zusage)에 따라 외부 감사 후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튀링겐(Thüringen) 주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시행되고 있음⁵³⁾

51) 「Gerichtskostengesetz」 § 34, 독일 「법원비용법」 제34조, 검색일자: 2022. 12. 15.

52) 독일 전자세무포털 웹사이트(ELSTER), <https://www.elster.de/eportal/formulare-leistungen/alle-formulare/antrverbindlicheauskunft>, 검색일자: 2022. 12. 15.

53) 독일 전자세무포털 웹사이트(ELSTER), <https://www.elster.de/eportal/formulare-leistungen/alle-formulare/antrverbindlichezusage>, 검색일자: 2022. 12. 15.

2) 구속력이 없는 정보 신청 및 질의회신(Unverbindliche Auskunft)

- 납세자가 질의를 희망할 경우, 납세자의 지역 관할 세무서 혹은 재무부 상원에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처리하며 약 90%는 현장에서 직접 질의를 해결하고 구속력이 없는 정보 제공으로 무료임⁵⁴⁾

바. 프랑스

- 프랑스는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LPF)의 Article L80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과 관련된 질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tax ruling 제도인 Rescrit fiscal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⁵⁵⁾
 - 납세자는 Rescrit fiscal 제도를 통해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질의(La question de législation)하거나, 또는 세법 규정과 관련된 납세자 자신의 개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의(Le rescrit général)할 수 있음
 - 두 제도 모두 질의대상에는 제한 없음
 - 세무전문가, 개인, 협회 또는 지방 당국 모두 질의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일반 세법(General Tax Code, CGI)에 규정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할 수 있음

1)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의(La question de législation)

- 「조세절차법」(LPF) Article L80 A의 제1항에 따라, 납세자는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질의할 수 있음
 - 동 질의 유형은 납세자의 실제 상황 또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법령 그 자체의 해석만을 대상으로 함

54) 재단법인 제품평가기관(Stiftung Warentest), <https://www.test.de/Servicezentren-der-Finanzaemter-Finanzaemter-ueben-noch-1546094-1546092/>, 검색일자: 2022. 12. 15.

55) 프랑스 행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551>, 검색일자: 2022. 11. 10.; 프랑스 「조세절차법」 제L80A조

- 동 질의 유형의 질의 내용, 기속력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이 어려움
-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한 질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질의 제도에 대한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2) 세법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 질의(Le rescrit général, 또는 Private Ruling)

- 「조세절차법」(LPF) Article L80 B의 제1항에 따라, 납세자는 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과세당국에 질의할 수 있음
 - 동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특정 상황을 기재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3개월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 그러나 납세자에게 ruling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3개월 기한은 '임시적 기한'으로 보아야 함
 - 다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3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내용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그림 III-111 참조)⁵⁶⁾
 - 첫 번째 항목인 'Identification du demandeur'에는 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함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명, 납세자등록번호(siren), 주소,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함
 -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신청인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56) 프랑스 국세청, <https://www.impots.gouv.fr/professionnel/le-rescrit-fiscal>, 검색일자: 2022. 11. 10.

- 두 번째 항목인 'Presentation de la situation de fait'에는 질의대상의 사실관계를 기재함
 -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실과 다름이 없이 기재하도록 함
- 세 번째 항목인 'Fondement juridique de la demande'에는 질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 기재함
 - 법령 원문, 관련된 예규 및 판례 등에 대해 기재함
- 네 번째 항목인 'Question posee'에는 질의를 기재하며, 마지막 항목인 'Analyse en fait et en droit par le demandeur'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해 기재함
- 신청서에 기재하는 상기의 내역은 신청인 인적사항, 사실관계, 신청 내용, 관련 법령,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와 판례,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서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11] 프랑스 Le rescrit général 양식

RESCRIT GENERAL	
<p>MODELE DE DEMANDE D'AVIS RELATIVE A LA MISE EN OEUVRE DE LA GARANTIE PREVUE AU 1° DE L'ARTICLE L. 80 B DU LIVRE DES PROCEDURES FISCALES</p> <p><i>Vous êtes invité à apporter des informations détaillées en joignant en annexe tout document susceptible de compléter utilement votre demande.</i></p> <p><i>Pour plus de précisions sur le champ d'application, les conditions d'application et l'étendue de la garantie, vous pouvez vous référer au BOI-SJ-RES-10-20-10 disponible en ligne.</i></p>	
I – IDENTIFICATION DU DEMANDEUR	
Si le demandeur est une personne morale OU Si le demandeur est une personne physique	dénomination sociale, siren, adresse du siège social, objet social, nom et coordonnées de la personne à contacter nom, prénom, adresse du domicile, adresse électronique et un numéro de téléphone
II – PRESENTATION DE LA SITUATION DE FAIT	
La présentation doit être précise, complète et sincère.	
III – FONDEMENT JURIDIQUE DE LA DEMANDE	
1. Textes de lois :	
2. Jurisprudence :	
3. Doctrine administrative opposable :	

[그림 III-11]의 계속

4. Autres :
<u>IV – QUESTION POSEE</u>
<u>V – ANALYSE EN FAIT ET EN DROIT PAR LE DEMANDEUR</u>
<p><u>Lieu de dépôt de la demande</u> La demande est à adresser à la direction dont dépend le service auprès duquel le contribuable est tenu de souscrire ses obligations déclaratives en fonction de l'objet de la demande. Pour une présentation des attributions respectives des différents bureaux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susceptibles de recevoir des demandes de rescrit général, se référer à ...</p> <p>Il est précisé que la réponse faite par l'administration ne s'applique qu'à la situation de fait présentée dans la demande, ne saurait bénéficier à un autre contribuable non visé dans la demande, ne pourra être invoquée dès lors que les éléments portés à la connaissance de l'administration seraient incomplets ou inexacts, ne saurait l'engager sur les conséquences fiscales et non fiscales autres que celles expressément visées par la demande. De plus, elle perdrait automatiquement toute valeur pour l'avenir en cas de modification de la situation de fait ayant fait l'objet de l'appréciation ci-dessus, de la législation et/ou de la réglementation, ou de la publication d'une nouvelle doctrine par l'administration.</p> <p style="text-align: right;">A....., le..... Certifié complet, exact et sincère</p> <p style="text-align: right;">Signature et qualité du signataire</p>

자료: 프랑스 국세청, “Le rescrit général,” <https://www.impots.gouv.fr/professionnel/le-rescrit-fiscal>, 검색일자: 2022. 11. 10.

- 답변에 포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은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며 이에 따라 「조세절차법」(LPF)의 Article L80 A에 따라 과세당국을 구속함⁵⁷⁾
-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유형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자를 보호함
 - 사실관계 및 상황의 평가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 입장이 ①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공식적이고 분명하여야 함
 - 과세관청의 공식적 입장이 부과대상 사건(일반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일자)보다 이전해야 하며, 공식적 입장의 제공과 부과대상 사건 사이에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변경이 없어야 함
 - 과세관청이 답변에 기재한 대로 납세자는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사실관계 및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경우 효력은 사라짐
 - 과세관청은 필요한 모든 사실관계, 상황 및 기타 요소를 제공받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구속력은 질의를 요청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질의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 또는 상황이나 다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단 법령에 대한 해석인 경우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세법해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사. 벨기에

- 벨기에는 지난 1993년부터 Advance Rulings Commission(ARC), Advance Decisions Service(ADS)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⁵⁸⁾

57)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01.html%23cta_fr_s_1.11.7., 검색일자: 2022. 11. 25.

58) IBFD, “Guide to Tax Rulings in Belgium – Part III: Advance Tax Rulings in Belgium – Chapter 6: What Is an Advance Decision? – Book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rb_p03&refresh=1667784401105%23gtrb_p03, 검색일자: 2022. 11. 7.

- 먼저 1993년부터 2002년 말까지에 기간 동안에는 Advance Rulings Commission을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질의회신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한정적이었음
 - 이후 1999년, Advance Decisions Service를 설립하여 운용하였으나, 이때에도 여전히 질의회신 대상 주제는 한정적이었음
- 2002년, 벨기에는 Act of 24 December 2002를 통해 Advance tax ruling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특정 상황 또는 거래에 벨기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Federal Tax Authority에 Advance Decision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해당 상황 또는 거래가 세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기존의 ARC와 ADS를 통해 운영된 질의회신 제도하에서는 질의회신 대상 주제가 특정한 주제로만 한정되었던 점과 달리, 2003년부터는 모든 직접세, 간접세, 국제 조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ARC를 폐지함으로써 ADS에서 모든 질의회신 제도를 총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이후 질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신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회신 제공에 시간이 과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벨기에 정부는 질의회신 제도를 담당하는 독립적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함
- 벨기에 정부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인 Rulings Office(RO)를 창설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해당 전문 인력들이 납세자들의 질의 처리에 온전히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즉 2005년부터 현재까지 Rulings Office(RO)에서 모든 질의회신 제도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RO에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모든 질의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벨기에 RO는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⁵⁹⁾
 - 질의회신의 주제마다 담당 매니저(leading manager)를 지정하여, 해당 담당 매니저를 중심으로 질의회신 업무를 진행함
 - 2010년 4월 1일 기준 총 6명의 담당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음
 - 네덜란드어 질의와 프랑스어 질의를 구분하여 담당 매니저를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 법인세 관련, 이전가격 관련, VAT 관련, 개인소득세 관련 등으로 주제를 구분하여 담당을 지정하고 있음

- 벨기에 RO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Décisions Anticipées(Advance Decision 또는 Advance Ruling)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법 관점에서 아직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 특정한 상황 또는 거래에 대하여 세법의 적용을 서면으로 결정하여 전달하는 제도로 정의됨⁶⁰⁾
 - 이러한 Décisions Anticipées의 목적은 납세자에게 사전적인 조세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함임
 - 벨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해당하는 Décisions Anticipées 제도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 벨기에의 질의회신 절차는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질의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최대 5년까지 과세관청을 구속함
 - Décisions Anticipées는 제공된 이후 5년간 유효하며, 해당 질의를 요청한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질의대상인 해당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가짐

59) Service Publique Federal Finances, "Welcome to the Ruling Website," <https://www.ruling.be/fr>, 검색일자: 2022. 11. 7.

60)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21. 10. 5., pp. 179~180.

- 이에 따라 질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완전성 있게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납세자가 사실과 동일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기속력을 갖지 아니함
 - 또한 질의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제한 없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벨기에 소재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질의를 요청할 수 있음⁶¹⁾
- (1단계: 사전요청) 납세자는 선택에 따라 Pre-filing request를 거칠 수 있으며, 이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이 가능함⁶²⁾
- 납세자가 pre-filing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 언어(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선택 가능) 및 대상 주제에 따라 담당 매니저가 지정되고, 해당 담당 매니저를 중심으로 회신 팀이 꾸려짐
 - RO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후 5 영업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접수 수령 확인 및 접수 번호를 통보함
 - Pre-filing 질의를 통해 공식 질의 이전에 실제로 공식 질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동 단계는 필수는 아니나,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가 동 단계를 거치고 있음
- (2단계: 공식요청) Pre-filing 단계 이후, 납세자는 공식 신청(Formal application)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식 질의요청에는 신청인 및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 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질의대상 특정 상황 또는 거래에 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설명,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판례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61) Service Publice Federal Finances, "Who can apply?," <https://www.ruling.be/fr/faq/qui-peut-introduire-une-demande>, 검색일자: 2022. 11. 7.

62) IBFD, "Guide to Tax Rulings in Belgium - Part III: Advance Tax Rulings in Belgium - Chapter 7: Modus Operandi - Book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rb_p03_c07&refresh=1670375725370%23gtrb_p03_c07, 검색일자: 2022. 11. 7.

- 또한 공식 요청서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공개된 질의회신 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요청 이후 답변 제공 전까지 관련된 상황 또는 거래에 신규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이를 RO에 제출하여야 함

- (3단계: 공식결정) 해당 질의를 담당한 팀은 결정을 내린 후 최종 승인을 위해 담당 매니저 협의체(board of leading managers)에 제출함
 -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에 상정된 질의건에 대해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림
 - 납세자의 공식 요청이 있는 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최종적인 공식 결정이 발행됨
 - 다만 3개월 기한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하나, 해당 기한은 상호 합의하에 연장 조정될 수 있음

- (4단계: 공개) 최종 결정을 내린 회신들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공중에 공개되나, 국외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음
 - 공개된 질의회신들은 www.ruling.be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네덜란드어 및 프랑스어로 모두 제공됨

3. 주요국의 운영 사례 비교

〈표 III-2〉 주요국의 질의회신 제도 비교

구분	제도	성격 ¹⁾	질의자 관련		문의내용 관련		과세당국의 회신 관련					사후관리 관련	
			실명 기재 여부	질의자 제한 여부	문의사항의 구체성	신청기한 (거래전/후)	담당 부서·기관	회신 기한	수수료 여부	기속력 여부	공시 여부	가산세 감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
미국	Information Letter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	기재	없음	제한 없이 세법 해석에 대한 사항이면 신청 가능	제한 없음	IRS	없음	없음	공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기재	없음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만 문의 가능	거래 수행 이전 ¹⁾	IRS	없음	있음 ²⁾	있음 ³⁾	공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영국	Non-Statutory Clearance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유사	기재	없음	거래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 ¹⁾	거래 수행 이전	HM RC	없음 ²⁾	없음	확인되지 않음	불가능 ⁴⁾	가능함	가능함
일본	문서 회답 제도	사전 답변 제도와 세법해석 제도 혼재	기재	없음	직접 실시한 거래 또는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거래 중 개별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사항	거래 전 문의의도 하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 담당 세무서	3개월 이내	없음	공시	없음	없음	불가

〈표 III-2〉의 계속

구분	제도	성격 ¹⁾	질의자 관련		문의내용 관련		과세당국의 회신 관련					사후관리 관련	
			실명 기재 여부	질의자 제한 여부	문의사항의 구체성	신청기한 (거래전/후)	담당 부서·기관	회신 기한	수수료 여부	기속력 여부	공시 여부	가산세 감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
호주	집단 결정 (public ruling)	세법해석 제도와 유사	신청인의 개인 정보 기재	없음 ¹⁾	계획 수행 주체로서 관련된 단체들의 이름 및 그 계획의 명칭과 설명, 참가자가 당사자인 계약, 행위 및 거래에 대한 설명 기재	거래 전 문의도 가능하나, 거래가 구체적으로 예정된 경우	담당 팀 배정	확인 되지 않음	없음	공시	없음	확인되지 않음	가능
	사적 결정 (private ruling)	사전 답변 제도와 세법해석제도 혼재	신청인의 개인 정보 기재	없음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서술	확인되지 않음	확인 되지 않음	없음	있음 ²⁾	공시	없음	30일	가능 ³⁾
	조언을 위한 사전협의 (Early engagement for advice)	사전답변 제도와 유사	신청인의 개인 정보 기재	개인 등 ⁴⁾	제한 없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 되지 않음	없음	없음	비공개	없음	확인되지 않음
독일	구속력 있는 세법 정보신청 (Verbindliche Auskunft)	사전 답변 제도와 세법해석제도 혼재	신청인의 개인 정보 기재	없음	납세자의 실제 사실 및 상황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거래 수행 이전, 이후 모두 가능	BZst	6개월	있음 ¹⁾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가능

〈표 III-2〉의 계속

구분	제도	성격 ¹⁾	질의자 관련		문의내용 관련		과세당국의 회신 관련				사후관리 관련		
			실명 기재 여부	질의자 제한 여부	문의사항의 구체성	신청기한(거래진/후)	담당 부서·기관	회신 기한	수수료 여부	기속력 여부	공시 여부	가산세 감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
프랑스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의 (La question de législation)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	확인되지 않음	없음	납세자의 실제 상황 또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법령 그 자체의 해석만을 대상으로 함	제한 없음	프랑스 국세청	확인되지 않음	없음	있음	공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세법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 질의 (Le rescrit général)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유사	기재	없음	질의대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¹⁾	거래 수행 이전	프랑스 국세청	확인되지 않음	없음	있음	공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Décisions Anticipées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유사	기재 ¹⁾	없음	질의대상 상황 및 거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법령 또는 판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거래 수행 이전 ²⁾	Office for Advance Tax Rulings ³⁾	확인되지 않음	없음	있음	공시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주: 주 1)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별도의 칸으로 기재된 국가(미국,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임

성격 1) 각종 제도의 성격 분석 및 분류는 우리나라 서면질의 제도와 비교하였으며, 주로 기속력, 문의 신청기한(거래·신고 전/후)으로 유사성을 비교함
 미국 1) 원칙은 실제 거래 수행 이전이나, 거래 이후라도 신고서 제출 이전인 경우라면 가능
 미국 2) 부과되는 수수료는 요청된 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미국 3) 단 해당 납세자가 아닌 다른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속력 없음

- 영국 1) 문의대상 거래 관련 정보뿐 아니라, 기존 정보, 판매민으로 세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영국 2)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나, 회신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님
 - 영국 3) 다만 확실성이 부재한 경우 HMRC는 발행을 꺼리는 편임
 - 영국 4) 답변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우선 신고한 이후 추후에 수정신고 가능함
 - 호주 1) 단 집단 결정제도는 세법의 관련 조항이 특정한 계획상 특정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제도이므로 질의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음
 - 호주 2) 사적 결정은 특정 단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신청한 자에 대한 한정적인 판결을 내리므로, 각각의 사적 결정에 대한 결과는 사적 결정 청구인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납세자가 신뢰할 수 없음
 - 호주 3) 청구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적인 판결에 의존한다면(사적 판결의 결과 납세의무가 더 작거나, 보조금이나 복리후생비 금액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클 경우 등) 나중에 그러한 사적 판결의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ATO는 그 결정에 구속되어 범칙금 또는 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 호주 4) 개인, 공공사업체, 비영리단체, 소기업 등 영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독일 1) 해당 납세자에게만 기속력이 있음
 - 프랑스 1) 질의대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질의의 법적 근거(법령, 예규 및 판례 등) 또한 기재해야 함
 - 벨기에 1) 신청인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
 - 벨기에 2) 거래 수행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거래가 세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벨기에 3) 벨기에 국세청(FPS Finance) 내의 조직으로, 질의회신 업무를 전담하며 질의가 접수될 때마다 각 질의에 대한 담당 팀이 꾸려짐
 - 벨기에 4)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나 연장 가능함
-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IV. 개선 방안

1. 개선 방안

- 우선 현행 서면질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기속력이 없는 질의회신 제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일부 국가의 경우 질의회신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으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회신의 경우 상당한 기속력이 부여됨
 - 미국은 기속력이 없는 제도인 information letter는 수수료 없이 운용 중이며, 기속력이 부여되는 letter ruling의 경우에만 난이도별로 차등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독일 또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질의회신은 기속력이 부여되는 질의회신 제도임
- 또한 세무 전문가 등으로 질의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가. 서면질의 양식 개선

- 현재의 서면질의 양식은 단순히 인적사항과 질의사항만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세무 전문가가 아닌 납세자가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난해함
- 그러한 난해함으로 인해 서면질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단순 세법 질의 상담이 늘어나 국세청의 세무 행정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서면질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질의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서면질의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우리나라의 사전답변제도 또는 일본의 문서 회답 제도와 같이 질의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면질의 체크리스트를 서면질의 양식에 첨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서면질의 신청인은 본인이 서면질의, 사전답변, 국세 상담센터 중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자각하거나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기재 예시를 양식에 첨부하거나 서면질의 신청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여 신청 서식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서면질의 신청서 양식상 서면질의 신청이 적합한 사례와 부적합한 사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해당 사항을 읽어보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체크리스트의 문항은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및 일본의 사전조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질문하려는 사안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서면질의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질의 방지 문항의 경우 ‘민원인 본인과 관련된 질의’, ‘세법 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인지 확인하는 문항이 유효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항에서 단순히 아니오를 고른 것으로 설문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하단에 ‘이러한 질의사안의 경우 서면질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청 제외 대항 질의를 예방할 수 있음
 - 서면질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문항의 경우 ‘단순 세법 상담에 해당하는 질의’, ‘개별 재산의 평가나 거래 등가액 산정에 관한 조회’,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의 취급 등이 법령, 해석 또는 과거 질의사례 등에서 밝혀지지 않음’이 유효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항의 하단에 '단순 세법 상담 또는 과거 질의사례에 관한 질문인 경우 국세 상담 전화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와 같은 올바른 상담 창구를 안내하여 신청 제외 대상 질의의 예방이 가능할 수 있음

〈표 IV-1〉 서면질의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

	항목	체크란
필수 체크 리스트	(1) 서면질의자가 실시하는 거래 등 질의자와 관련된 거래이다.	예 · 아니오
	(2) 질의 내용이 세법 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니다.	예 · 아니오
	※ 위 항목에서 한 문항이라도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서면질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5조의3)	
	(3) 세법 해석이 아닌 단순 세법 상담에 해당하는 질의가 아니다.	예 · 아니오
	(4) 개별 재산의 평가나 거래 등가액 산정에 관한 조희가 아니다.	예 · 아니오
	(5) 거래 등과 관련된 세무상의 취급 등이 법령, 해석 또는 과거 질의사례 등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예 · 아니오
	※ 단순 세법 상담 또는 과거 질의사례에 관한 질문인 경우 국세 상담 전화 126으로 문의 바라며, 개별 재산의 평가나 거래 등가액 산정에 관한 조희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대상이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세, 관세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 아니오
	(7)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면서 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경우가 아니다.	예 · 아니오
	(8) 서면질의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다.	예 · 아니오
	(9)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	예 · 아니오
(10)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가 아니다.	예 · 아니오	
(11) 본 질의는 세법 해석과 관련된 것이므로, 서면질의자의 거래에 세무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 * 질의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에 기속력이 부여(납세자의 세무상 확실성 부여)하기 위 해서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 아니오	
※ 필수체크 시트의 모든 항목에 '예'로 답변하여야만 서면질의의 질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며, 체크 시트의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서면질의의 답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선택 체크 리스트	(11) 서면질의 이전에 세무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다.	예 · 아니오
	(12) 질의 대상 세법 해석에 대해 서면질의자 스스로 법령 및 해석 등에 대한 결과가 존재하는 지 찾아보았다.	예 · 아니오
	※ 선택체크 리스트의 항목에 대한 답변은 선택사항으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서면질의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료: 저자 작성

나. 명칭 변경

- 현행 세무실무상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예규, 통칙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
 - 납세자가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질의할 때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아닌 일반 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신청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 서면질의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여 ‘사실판단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 등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또한 다수 발생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Advance Ruling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이나, 도입 이후에도 서면질의 제도는 기존의 명칭 그대로 운용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즉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면질의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 10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도입된 이후에도 서면질의 제도는 기존의 명칭 그대로 계속 운용되고 있어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일반 납세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적절한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의 현행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각각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 제도와 ‘사전답변’ 제도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오윤·김진수(2008)는 우리나라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간략하게 ‘사전답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⁶³⁾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명칭에서 ‘세법’은 불필요한 사족에 해당하며, 어차피 국세청장의 이름으로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이름은 굳이 붙일 필요가 없고, 동 제도는 개별 사건에 대한 세법의 적용 결과에 대한 회신이므로 단순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서면질의’ 제도의 명칭 또한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질의와 구체적인 개별적 상황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대한 질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 제도 등의 명칭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Information Letter’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임
 - 또한 프랑스의 경우,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의(La question de législation)’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임
 - 이외의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Advance Ruling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음

다. 업무담당부서 신설 또는 개편

1) 질의회신 담당 조직 신설

- 질의회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벨기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재 벨기에의 경우 질의회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인 Rulings Office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벨기에 또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 건수가 폭증한 것과 유사하게, 접수된 질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신 제공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의성 있는 답변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63) 오윤·김진수(2008), p. 165.

- 이에 Rulings Office(RO)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납세자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벨기에 Rulings Office(RO)는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담당 매니저(leading manager)를 지정하여, 해당 담당 매니저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질의회신 업무를 진행함
 - 네덜란드어 질의와 프랑스어 질의를 구분하여 담당 매니저를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 법인세 관련, 이전가격 관련, VAT 관련, 개인소득세 관련 등으로 주제를 구분하여 담당을 지정하고 있음
- 담당 매니저를 중심으로 꾸린 팀이 질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후 최종 승인은 별도 협의체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짐
 - 협의체는 주 1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침
 - 벨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질의회신을 운용하므로 동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해당 법률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였음⁶⁴⁾
 - 당시 김영란법의 시행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법령해석을 묻는 문의가 계속되어 문의에 대처가 늦는다는 비판이 있었음⁶⁵⁾
 - 이에 한시적으로 해석 전담 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여 대응 인력을 증원 하였으며, 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전담하도록 하였음

6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담조직(청탁금지제도과) 신설」, 보도자료, 2016. 3. 25.,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4925&tag=&nPage=33, 검색일자: 2022. 12. 5.

65) 『중앙일보』, 「권익위 홈페이지 문의 1000건, 답변은 1건뿐」, 2016. 10.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64511#home>, 검색일자: 2022. 12. 5.

2) 질의회신 담당 조직 변경

- 일본의 경우 납세자의 담당 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질의를 처리한다면 중앙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일선 세무서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일선 답변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에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음

3) 질의회신 접수 조직 신설

- 현재 서면질의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는 서면질의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의를 하는 등과 같은 상담종결 대상 사례가 서면질의 담당 부서의 업무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서면질의상 상담종결 대상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세상담센터 126의 활용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와 인터넷의 두 가지 상담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법 상담 또는 홈택스 상담 모두 절대적으로 전화상담의 비중이 높음
 -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상담 중 세법 상담은 전화 상담이 87.8%, 인터넷 상담이 12.2%를 차지하고, 홈택스 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이 97.9%, 인터넷 상담이 2.3%를 차지함⁶⁶⁾
- 따라서 서면질의와 유사한 성격의 질의방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을 확대하고 납세자들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사항을 유도한다면 서면질의의 부하를 줄이는 한편, 각 상담 수단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66) 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0, p. 79.

- 이러한 인터넷 상담 유도는 기존의 국세상담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특정 달의 저조한 전화상담 응답률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 접수시간 확대(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 접수) 등을 통해 인터넷 상담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적극적인 방안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질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홍보를 늘리고, 관련 홍보 시 국세상담센터(126)의 명칭 변경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반적으로 국세 상담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번호인 126이 광범위하게 인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인 126보다는 국세상담센터라는 명칭 또는 도메인을 주요 홍보 요소로 삼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 또한 가능함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회신을 활성화하고 각 질의회신 부서의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질의회신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질의회신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부서 신설 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본청 답변 서면질의, 지방청 또는 세무서 답변 서면질의, 국세상담센터 질의답변으로 나누어 세법 관련 질의사항을 관리한다면 납세자의 판단이 아닌 국세청의 판단으로 질의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 더욱 적합한 답변 부서가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음
 - 단 질의 사항 접수 후 각 평정 요소들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해당 평정에 대한 평정자의 교육 및 각 답변 관리 수준에 적합한 평정의 설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질의에 대한 평가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 적합성, 과거 질의사항과의 차별성, 답변 대상 관련 법령의 중요성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평정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본청 서면질의, 지방청 또는 세무서 서면질의, 국세상담센터 답변 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업무담당부서를 개편 또는 신설하는 방안의 경우 국세청 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운용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장기간을 두고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주된 개선방안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표 IV-2〉 질의사항 평정 양식 및 평정 기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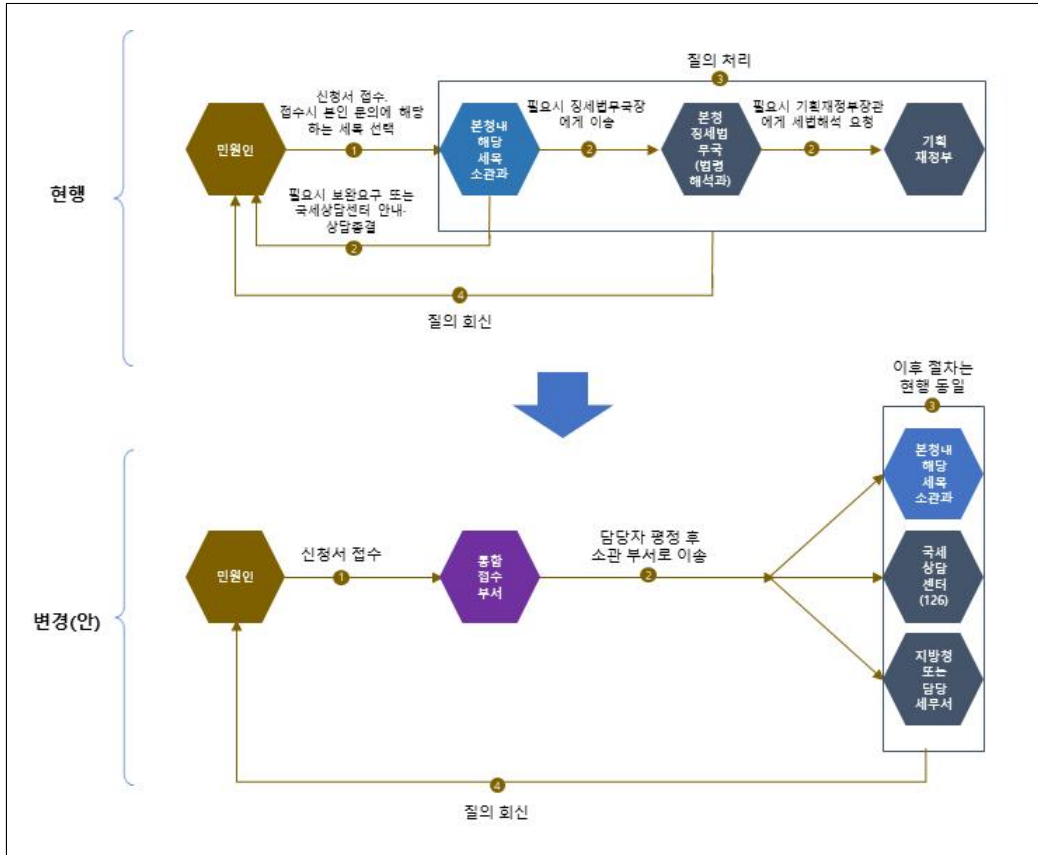
평정요소 ¹⁾		담당자 평정		
		상	중	하
가. 질의자와의 관련성				
나.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 적합성				
다. 과거 질의사항과의 유사성				
라. 질의의 구체성				
마. 답변 대상 관련 법령의 중요성	예상 세수 중요성			
	거래 빈도			
	신중 거래			
바. 관련 세법 조문의 난이도				
사. 질의자 평가	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대기업			
	사업 규모			
	세무전문가 관련 여부			
계		개	개	개

※ 질의 담당자가 평정요소 n개 항목 중 n개 항목 이상을 '상'으로 평정하고 '하' 평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본청이 서면질의를 처리하고, 질의 담당자가 평정요소 n개 항목 중 n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고 '상' 평정 항목이 없는 경우 국세상담센터가 질의사항을 답변하며, 나머지 경우 지방청 또는 담당 세무서가 서면질을 답변하는 것으로 함

※ 단, 「마. 답변 대상 관련 법령의 중요성의 경우」 문의 대상 법령이 최근 개정되었거나 납세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중대한 경우 평정요소와는 무관하게 본청에서 처리할 수 있음

주: 1) 각 평정 요소는 질의 적합성 및 본청,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의 질의 해결 역량 등을 고려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 통합 접수부서 신설 방안 처리절차 도식



자료: 저자 작성

2. 각 방안의 종합 검토 결과

〈표 IV-3〉 각 개선 방안의 종합 검토 결과 요약

방안	제1안		제2안		제3안	
	서면질의 양식 개선	명칭 변경	(1) 질의회신 접수조직 신설	(2) 질의회신 담당조직 변경	(3) 질의회신 접수조직 신설	
구체적 이행방법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검 증할 수 있는 서면질의 체 크리스트와 함께, 실제 기 재 예시를 서면질의 양식 에 첨부하는 방안	현행 '서면질의' 제도는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적 질의' 제도로, '세법해 석 사전답변' 제도는 '사 진답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질의회신 업무만을 담당 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 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서면질의 업무를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방안	질의회신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부서 신설 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 라 분청 답변 서면질의, 지방청 또는 세무서 담 변 서면질의, 국제상담 센터 질의답변으로 나 누어 세법 관련 질의사 항을 관리하는 방안	
참고사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일본	미국, 프랑스	벨기에	일본, 독일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회신 건수 증가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아닌, 질의회신 건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 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변경만 이루어지 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 한 방안임 단순 민원성 질의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담당과의 질의회신 업에 소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므로 국제행 정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의 질의를 일 선 세무서에서 담당 하므로 중앙청의 부 담이 경감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접수부서에서 1 차 검토 후 분청으로 이송하므로 본청의 부 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음 	

〈표 IV-3〉의 계속

방안	제1안	제2안	제3안		
	서면질의 양식 개선	명칭 변경	(1) 질의회신 담당조직 신설	(2) 질의회신 담당조직 변경	(3) 질의회신 접수조직 신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현행 사전답변제 도에도 체크리스트가 제 공되고 있으나, 요청자 가 체크리스트 문항을 충분히 고민 없이 모두 '예' 또는 '해당 없음'으 로 체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단순 명칭변경만 으로 문의 건수가 감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음 • 제도의 명칭 변경이므 로 국제청 홈페이지 안 내 및 양식 등 또한 함 께 변경해야 함 • 또한 납세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 한 홍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사후적 대 처방안으로, 질의의 수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 울 것임 •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운용문제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방안 또한 납세자 의 질의에 대한 사후 적 대처방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접수부서 담당자 의 평정이 다소 주관 적일 수 있으므로 적 절한 평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V. 결론

- 현재 우리나라 서면질의 제도의 경우 복잡하고 높은 빈도로 개정되는 우리나라 최근 세법 동향의 특성상 과거에 비해 질의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질의회신 청구로 인해 답변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난점이 있고 답변의 소요시간도 길어지고 있음
- 단순히 서면질의 청구 횟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서면질의의 대상이 아닌 단순 세법 상담 또는 부적합한 질의인 '상담종결' 대상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국의 경우 세무 전문가 등의 질의 회신을 질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질의 회신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으나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회신의 경우 상당한 기속력을 가짐
 - 대부분의 경우 질의 답변사안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답변 사항이 질의자에게만 효력을 가져 다른 납세자에게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또한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의 서면질의 제도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서면질의 제도의 내부적인 개선안과 외부적인 개선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내부적인 개선안의 경우 서면질의의 양식을 개선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면질의의 현재 양식상 다른 나라 또는 세법해석제도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도입

하거나, 어떠한 질의사항이 서면질의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서술한 내용을 양식에 추가한다면 질의자가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적합한 질의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명칭을 그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질의자가 본인의 질의사항에 보다 적절한 질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외부적인 개선안의 경우 서면질의와 관련된 업무부서를 개편하거나 국세상담센터의 활용 방안을 재고하는 방안이 있음
 - 업무부서 개편의 경우 벨기에와 같이 질의회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일본 또는 독일과 같이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질의 사안을 담당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상담센터 활용의 재고의 경우 현재 전화 질의가 대부분이므로 인터넷 질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상담센터(126)와 관련한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 질의를 유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서면질의 접수를 총괄하는 접수부서를 신설하여, 접수 담당자의 평정에 따라 본청 각 담당 소관과로 이송될 질의, 국세상담센터로 이송될 질의 그리고 지방청 또는 담당 세무서로 이송될 질의를 분류하는 1차 분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본청의 질의회신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각 개선안별로 현실적인 예산문제 또는 인력 운용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을 절충 및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직면한 의문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세행정의 소통 창구로 서면질의 제도는 거듭나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p. 79.
-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과 발전방안」, 『의회신문』, 2009. 9. 18.,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1161>, 검색일자: 2022. 9. 30.
- 김봉래·홍정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6권 0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pp. 121~168.
- 김수성·박성욱, 「신종금융상품 과세 사례분석을 통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회계정보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pp. 337~358.
- 송병철,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8., pp. 301~304.
- 오윤·김진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법해석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이경근·김범준,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8, pp. 114~155.
- 『연합뉴스』, 「세법해석 요청에 답없는 국세청...“접수 1년 넘은 서면질의 20%”」, 2020. 8. 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50300002>, 검색일자: 2022. 9. 8.
- 『일간 NTN』, 「국세청, “세법해석 서면질의에 신속 정확한 회신 위해 최대한 노력”」, 2022. 9. 1.,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18>, 검색일자: 2022. 10. 19.

『중앙일보』, 「권익위 홈페이지 문의 1000건, 답변은 1건뿐」, 2016. 10.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64511#home>, 검색일자: 2022. 12. 5.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21.

OECD, *Tax Administration 2022: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2.

2. 법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독일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독일 「법원기본법」(Gerichtskostengesetz)

미국 「국세청 훈령」(Revenue Procedure)

프랑스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3. 판례 및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4. 웹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법제처, <https://www.moleg.go.kr>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ATO, <https://www.ato.gov.au/>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ato.gov.au>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https://www.bzst.de>

Centre des finances publiques, <https://www.impots.gouv.fr/>

Elster, <https://www.elster.de>

HMRC, <https://www.gov.uk>

IBFD, <https://research.ibfd.org>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Le site officiel d'information et de démarches administratives, www.service-public.fr

LexisNexis, <https://www.lexisnexis.com>

National Tax Agency of Japan, <https://www.nta.go.jp>

Service Publique Federal Finances, <https://www.ruling.be/fr>

Stiftung Warentest, <https://www.test.de/>

세정연구 22-06

주요국의 서면질의 제도 연구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정훈·권순오·이희경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205-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